

기초조사 자료집

온두라스 법제 개관

오일석



온두라스 법제 개관

오일석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제1장 온두라스의 현황 / 7

제1절 온두라스의 사회문화적 현황	9
1. 온두라스 개관	9
2. 온두라스의 역사	10
제2절 온두라스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	14
1. 온두라스 경제에 대한 이해	14
2. 온두라스 법원(法源)	19
3. 법률제정 절차	20

제2장 정부조직과 법제 / 21

1. 온두라스 헌법 개관	23
2. 헌법 재판	25
3. 지방 자치	26
4. 행정부	26
5. 입법부	27
6. 사법부	29
7. 법무장관	30
8. 인권담당관(Human Rights Commissioner)	31
9. 행정의 집행과 분쟁의 해결	32

제3장 온두라스 주요 정책 집행 법제 / 33

제1절 온두라스 개인정보 보호법	35
1. 개요	35
2. 정의	36
3.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37
4. 이전	37
5. 보안조치	38
6. 집행	38
7. 기타	38
제2절 온두라스 통신제한법	38
1. 범죄수사에 대한 감청	39
2. 법원에 의한 통신데이터 요청	40
3. 국가안보 및 긴급한 경우	41
4. 통신분야법(Law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Decree 185-95)	41
5. 통신분야법(Law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Decree 185-95)	42
제3절 온두라스 사회보호법제	42
1. 사회보호법의 의미	42
2. 사회보호 체계의 내용	43
3. 사회보호 체계의 운영과 전망	44
제4절 온두라스 전자서명법	45
1. 통칙	45
2. 인증기관	50
3. 인증서	53
4. 전자서명 가입	54
5. 승인당국	55
6. 특별제도	56
7. 기타 조항	56

제4장 온두라스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 59

제1절 개요	61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	61
2. 외국인투자의 형태	62
3.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제	62
제2절 온두라스 투자증진 및 보호법	66
1. 투자자 보호	66
3. 분쟁방지제도 절차	70
2. 지역별 투자	78
3.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절차	79
4. 투자촉진기관	80
5. 경과조항	83
제3절 온두라스 민간투자진흥법	89
1. 목적과 원칙	89
2. 민관합작투자 체계	92
3. 제도적 기본틀	98
4. 투명성과 당사자 보호	105
5. 경과조항	10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온두라스의 현황

제1절 온두라스의 사회문화적 현황

제2절 온두라스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제1장

온두라스의 현황

제1절 온두라스의 사회문화적 현황

1. 온두라스 개관

온두라스는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국가명은 온두라스공화국 (República de Honduras)이다, 1982년 1월 11일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헌법은 1999년에 개정되었다. 현재 대통령은 Juan Orlando Hernandez이며 2014년 1월 27일 취임하였으며 임기는 4년이다. 의회는 단원제 의회로서 128명의 의원들이 4년의 임기로 일하고 있다. 2016년 2월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당(PN) 48석, 자유재건당(LIBRE) 31석, 자유당(PL) 27석, 기타 정당 15석, 무소속 7석이다. 온두라스의 면적은 112,090km²로 한반도의 약 1/2에 해당하며,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85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는 테구시갈파(Tegucigalpa)로 인구는 약 125만명이다. 종족은 혼혈 (메스티조) 90%, 원주민 (인디오) 7%, 흑인 2%, 백인 1%를 각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는 카톨릭 (85%), 기독교 (10%), 기타 (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온두라스는 서쪽에는 과테말라, 남서쪽에는 엘살바도르, 남동쪽에 니카라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카리브해, 남쪽은 폰세카만을 거쳐 태평양에 접해있다. 대륙 외에 카리브 해안에 스완 제도와 바이아 제도를 영토로 하고 있다. 국토의 70%를 산지

1) <http://hnd.mofa.go.kr/korean/am/hnd/situation/situation/index.jsp>

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이 가운데 900미터 이상의 고원이 절반에 달한다. 가장 높은 산은 해발 2,850미터의 “세라케 산”이다.

수도는 “테 구시 갈파”이며, 대서양 카리브해 측의 주요 항구로 “푸에르토 코르테스”가 있다. 온두라스 최대의 산업 도시는 ‘산 페드로 술라’이며, 기타 주요 도시로 “라 세이바(라 세이버)” 등이 있다.

기후는 카리브해 연안의 저지대는 고온 다습 한 열대성 기후이다. 산악 지역은 건조하지만 장마가 있는 온화한 기후이다. 특히 국토 주요부가 해발 1,000 ~ 1,500미터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춘에 가까운 기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5월부터 7월과 9월부터 10월에는 우기가 나타난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적지만, 다른 중미·카리브해 국가와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와 함께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으로는 바나나, 커피, 면화 재배를 주로 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금, 은, 납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개발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산 자원의 경우 새우를 수출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16%로 120만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는 미국 자본이 카리브 해안 열대 저지대에서 개시한 바나나 농장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대 산업도시인 산 페드로 술라의 발전은 바나나의 발전이라고도 한다.

2. 온두라스의 역사

온두라스에서는 기원전 4세기부터 10세기에 걸쳐 마야 문명이 번창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1502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되었다.²⁾ 1519년에 스페인 ‘에르

2) <https://en.wikipedia.org/wiki/Honduras>; http://www.gtc-asia.co.jp/simuketi_usa/1/195.html 참조.

난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였고, 1521년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면도 온두라스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1570년대에 테 구시 갈파 주변에서 은광이 발견되었지만, 그 개발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세기 전반에는 중남미 각지의 쿠리오료들 사이에서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나폴레옹 전쟁’에서 스페인 본토가 지면서, 1808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부르봉 왕가의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키자 “스페인 독립 전쟁”이 발발했다.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에서도 가짜 왕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1811년부터 독립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1821년 과테말라 총독령이 독립하면서, 같은 해 “아구스틴 드 이투루비데”의 “제1차 멕시코 제국 ”과 합병하였고, 1823년에 중앙 아메리카 연방(중미 주들 연합)이 출범하였다.

온두라스 출신의 ‘프란시스코 모라산 “장군은 자유주의 엘살바도르파로 보수주의인 과테말라파” 라파엘 카레라’장군과의 싸움을 계속하였지만, 1838년에 중미 연방이 와해되면서 “온두라스”로 독립하였다. 현재도 모라산 장군은 온두라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1870년대에 코스타리카를 필두로 중미 각국에서는 커피 농장이 발달하지만, 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인구가 적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커피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온두라스는 커피 대신에 마이너 키스 의해 바나나 농장이 형성되어,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키스는 1899년에 보스턴 과일사와 합병하여 유나이티드 과일 회사를 설립하였고, 중미 전체에 군림하게 되었다.

1907년 니카라과는 온두라스를 침공하여 전역을 지배하였지만, 미국의 중재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 중미 사법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에도 온두라스는 국내의 반란 등으로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고, 1919년에는 내전이 발발하여 혼란에 빠지자, 미국이 바나나 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정 간섭에 착수하게 되었다.

1920년대 온두라스는 세계 바나나 시장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29년 발생한 세계대공황으로 바나나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유나이티드 과일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쟁의가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이 혼란을 틈타 1933년에 ‘티 부르시오 안 디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 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의 바나나 회사와 강력한 관계를 배경으로 강권 통치를 실시하였고 그의 독재 정권은 1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됨에 따라 군사 정권이 계속 설립되었다. 또한 미국의 석유 회사가 니카라과 국경 부근에서 유전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57년 5월, 온두라스 동부에서 니카라과와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7월 21일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960년 중미 공동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온두라스는 공업국인 엘살바도르의 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밖에 취급되지 않자, 온두라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약30만명의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에서 불법 이민자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후 농지 개혁으로 인해 이 불법 농업 이민 문제가 양국의 갈등으로 크게 비화되어, 1969년 엘살바도르와 이른바 ‘축구 전쟁’³⁾이 발생하게 되었다.

축구 전쟁 후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위해 1971년에 중미 공동 시장을 탈퇴했다. 1979년 니카라과 혁명 이후 온두라스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에 대한 반대하면서 니카라과 친미 반정부 민병대의 가장 유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이 때문에 미 육군과 공군, 이스라엘 방위군 및 아르헨티나 육군 등 많은 반공 국가 군대가 온두라스에 주둔하게 되었다.

온두라스는 1981년 민정 이양에 성공하고 선거 결과 자유당 정권이 집권하였다. 그렇

3) ‘축구 전쟁’은 1969년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인데, 같은 해 6월에 열린 ‘1970 FIFA 월드컵 예선전’에서 양국이 국민 감정에 기초하여 국교를 단절하게 되면서 ‘축구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양국 간 국경 문제, 온두라스 영내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이민자 문제, 무역 마찰 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지만 군사적 정변은 계속되었다. 1985년에 아스 코나 정권이 성립하면서, 미국과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가 보다 강화되었다.

이후 온두라스는 1998년 허리케인 ‘미치’에 의한 재해 이후 국제 사회의 지원을 얻으면서 부흥을 이루려고 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를 포함한 경제·사회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 1월에 집권한 스라야 자유당 정부는 투명한 정부와 시민 참여를 기치로, 교육, 보건, 치안, 에너지 가격 안정, 식량 안보 등 국내 여러 문제 해결을 추진하여 왔지만,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여 개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온두라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등 좌파 정부와 교류하고자 한 이후 정부와 국회 사이의 대립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9년에 셀라야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소집을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적이라고 판결하였지만 셀라야 대통령이 설문 조사를 강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이 2009년 6월 28일 쿠데타를 실시하여 셀라야 대통령을 국외로 추방하고 미체레티 “임시 대통령”하의 ‘임시 정부’를 출범시켰다. 국제 사회는 일제히 쿠데타를 비난하고 미주기구 (OAS :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는 온두라스에 대하여 회원 자격 정지를 결정하였다. 유엔 총회도 비난 결의를 채택하였다. 10월 30일 셀라야 대통령 측과 미체레티 “임시 대통령” 측이 쌍방 화해 정부의 설치 등을 포함한 “테 구시 갈파 산호세 합의”를 성립시켰지만, 양측의 생각 차이로 동 합의는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였다. 2009년 11월 29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당시 야당인 국민당의 “로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0년 1월 27일 취임한 “로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쿠데타에 의해 발생한 국가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탈출을 선언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 복구에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취임식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나마만이 국가원수가 참여하였고, 중남미 국가의 대부분은 취임식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로보 대통령은 쿠데타 이후 온두라스 국내의 화합과 국제 관계의 복원에 전력하여 다

수의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2011년 4월 9일,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중재로 로보 대통령과 스라야 전 대통령이 ‘카르타헤나 합의’에 서명하고 화해함에 따라, 셀라야 전 대통령은 온두라스로 귀국하였다.

또한 2011년 6월 1일 OAS 특별 총회에서 온두라스의 OAS 복구가 승인되었다. 2013년 11월 24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당시 여당인 국민당의 에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2014년 1월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제2절 온두라스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

1. 온두라스 경제에 대한 이해

가. 경제

온두라스는 전통적인 바나나, 커피, 새우 등 농수산업에서 탈피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허리케인 ‘미치’에 의한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 보세 가공 구역, 제조업(특히 섬유 산업) 및 식용 민물 고기 킬라피아의 수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와 해외투자의 감소 및 해외 거주 국민에 의한 송금 감소 등으로, GDP 성장률은 2007년 6.3%에서 2008년 4.0% 까지 떨어졌다. 또한, 2009년 6월에 발생한 쿠데타의 영향으로 해외투자 또한 동결 내지 감소하고 있다.

한편 온두라스는 2004년에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미국 사이의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DR-CAFTA : The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2006년 4월에 발효시켰다.

온두라스는 국가 개발에 관한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PRSP(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1) 빈곤과 절대 빈곤율 24% 감소, 2) 취학 전 교육의 증대, 3) 기초 교육(6년) 수료 비율 95%로 증대, 4) 중학교 교육(3년) 수료 비율 70%로 증대,

5) 청년 노동 인구의 50%에 대한 중등 교육을 수료, 6) 5세 미만 사망률을 절반감소, 7) 5세 미만 영양실조 비율 20%이하로 감소, 7) 산모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10 만명 당 147명에서 73명으로), 8) 국민 95%에 대한 식수 및 위생 시설 (분뇨 처리) 보장, 9) 여성 인간 개발 지수 20%로 상향, 10) 개발 전략의 지속적 실행 등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 지속적인 경제 성장, 2) 농촌 빈곤 감소, 3) 도시 지역 빈곤 감소, 4)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5)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 6) 정책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3년 10월에 세계은행과 IMF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 기관의 승인을 얻었다. 아울러 위 정책보고서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하여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 공급을 80% 이상, 인구 500명 이상의 커뮤니티에 대한 100%의 전화 보급률 등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추가하였다. 셀라야 정권은 2006년 8월에 PRSP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2008년 11월에 PRSP를 발전시킨 “국가 개발 계획 2030”을 발표하였다.

나. 기반시설

1) 도로

온두라스 도로기금(Honduran Road Fund)에 의하면 온두라스는 14,044km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한다.⁴⁾ 한편 온두라스에서 도로는 1차도로, 2차도로 및 지방도로로 분류된다. 그 외의 도로는 3차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온두라스 기반공공서비스장관(Secretariat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 : INSEP)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아니다. 이 도로 가운데 21.2%인 2,978km는 포장이 되었고 78.8%인 11,066km는 비포장인 상태이다.

위 도로기금에 의하면 1차도로는 온두라스의 주요 지점이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

4)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Road Network 참조.

로로서 총 연장 3,275km에 해당한다. 2차도로는 주요 도시와 지역을 1차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며 총 연장 2,554km에 해당한다. 지방도는 지역 소도시와 마을을 1차 및 2차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각 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로를 말하며 총 연장 8,215km에 해당한다.

2) 공항 및 항만

온두라스의 주요 공항은 Toncotin과 Ramón Villeda Morales 공항인데, 마이애미, 휴스턴, 뉴올리언스 및 멕시코와 중미 국가의 주요도시로의 직항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⁵⁾ 이 밖에도 Juan Manuel Gálvez, Golosón 공항이 있다. 한편 Palmerola 국제공항이 2018년 중반에 건설될 예정이다.⁶⁾ 이 공항 건설에는 1억6천3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Toncotin 국제공항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두라스에는 대서양과 인접한 북부에 Puerto Cortés, Puerto Castilla, La Ceiba, Roatán, Tela 등 5개의 항구가 있다.⁷⁾ 또한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에 San Lorenzo 항구가 있다. Puerto Cortés, Puerto Castilla 및 San Lorenzo 등 3대 항구에서 대부분의 해상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Puerto Cortés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미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가운데 하나이며 온두라스의 제1항인 동시에 현대적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Puerto Castilla 및 San Lorenzo는 설탕과 새우에 대한 수출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3) 철도

온두라스에서는 바나나 회사에 의하여 785km의 철도가 건설되었다.⁸⁾ 이 철도 가운데 600여km는 1900년에 Standard Fruit Company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나머지 190여km는 Chiquita Barnd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인 Tela Railway Company의 것이다. 1983년 온두라스 정부는 위 Standard Fruit Company 철도를 국유화하고 온두라스 철도청(National

5)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Air Port 참조.

6) <http://www.passengerterminaltoday.com/viewnews.php?NewsID=83796>

7)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Ports and Decks 참조.

8)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Railway 참조.

Railway of Honduras : FNH)를 설립하였다. 이 두 철도는 모두 온두라스 북부의 해안과 북서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로 바나나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철도는 주로 온두라스 시민을 수송하기 보다는 화물 수송용이며 관광객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4) 도시교통

온두라스의 도시에서는 버스나 택시가 이용되고 있다.⁹⁾ 온두라스의 주요도시 및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 회사들이 영업하고 있다.

5) 전력

수도인 떼구시갈파(Tegucigalpa)로부터 북쪽 해안으로 약17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에 건설된 Francisco Morazan댐이 온두라스 제1의 발전소이다.¹⁰⁾ 온두라스 국영전력회사(ENEE)는 발전된 에너지를 민간에 전달하고 있으며 발전 에너지의 전송과 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7년 재생에너지발전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온두라스의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¹¹⁾ 왜냐하면 동 법에 따라 국영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고 전송 및 배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력 및 풍력 관련 에너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또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발전을 통하여 전기 보급률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 상하수도

온두라스 국영상하수도서비스(SANAA)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온두라스 시골의 경우 상하수도 보급률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서비스는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¹²⁾ San Pedro Sula와 같은 지방 지역에 대해서

9)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Urban and Interurban Transport 참조.

10) Ricardo Anibal Mejia, Doing Business in Honduras-Honduras under CAFTA, Bufete Mejia & Asociados(April 2006), p.3.

11)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Electricity 참조.

SANAA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상하수도 서비스를 대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상하수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7) 통신

1995년에 설립된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 CONATEL)는 온두라스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¹³⁾ 즉 유선, 라디오, TV 및 유무선복합 방송,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미디어 등을 통하여 신호, 음향, 이미지, 동영상, 기타 콘텐츠 등을 방송, 송출, 전달 또는 수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온두라스의 통신 시장은 국영통신회사(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pany : HONDUTEL)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지만 1996년에 개방하여 Tigo, Claro 및 Digicel 등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 온두라스 정부는 국영통신회사를 통하여 핸드폰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가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을 국내외 기업에 발급하였다. 민간 및 기업을 위한 온두라스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광뿐만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

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기반시설 정비

온두라스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공식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는바 주요한 정보에의 접근이 곤란하다.¹⁴⁾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온두라스 정부는 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온두라스 정부는 중국 통신회사와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에 합의하였다.

12)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Sewage system 참조.

13)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Telecommunications 참조.

14)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Digital Government 참조.

2010년에 온두라스 정부는 민관협력증진법을 통과시키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하여 COALIANZA를 설립하였다.¹⁵⁾ 이후 1) Palmerola 국제공항 건설, 2) 북부 해안부터 남부에 이르는 도로망 정비 사업, 3) 수력발전 사업, 4) Nacoame 도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 사업, 5) 관광리조트 건설을 위한 Bahia de Tele 사업, 6) Puerto Cortes의 국영항만기업 터미널 개선 사업 등이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2. 온두라스 법원(法源)¹⁶⁾

가. 법원

온두라스 민법전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온두라스에서 법률은 제1차적 법원이 되며, 판례와 법언은 물론 법으로 인식될 정도의 상식과 관습이 법원이 된다고 한다. 상식과 관습은 도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공공의 명령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법원으로 인식되어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온두라스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바 성문화된 법, 특별법, 행정부의 규칙 등 성문의 법규가 제1차적 법원으로 간주된다. 온두라스에서 법률은 헌법 제213조부터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시행되며 관보에 기재된 이후 효력을 갖는다.

나. 조약

온두라스 헌법은 조약의 위상에 대한 7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온두라스는 인간 연대(human solidarity),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불가침(non-intrusion), 평화 공존(consolidation of peace) 및 보편적 민주주의(universal democracy) 등을 언급하면서 온두라스의 원칙과 관행을 국제법에 부합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 중재 및 국제 사법기관의 결정은 온두라스에서 강행적 효력을 갖는다. 온두라스

15) CENTRAL LAW(2014), Doing Business in Honduras, Active Projects in Honduras 참조.

16)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Honduras1.html> 4.1. 4.2 4.3 참조.

정부가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국제 조약은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자국법제에 편입될 수 있다.

국제 조약이 온두라스의 헌법에 배치되는 경우 헌법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약과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헌법 제205조 제30항은 행정부가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국제 조약에 대하여 국회가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45조는 온두라스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교섭에 들어간 조약에 대하여 체결 및 강행력을 부여하였거나 조약 및 합의에 나아간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기 전에 비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제정 절차¹⁷⁾

온두라스에서 법률은 국회의원, 대통령(장관이나 국무위원을 통하여),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안은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3일 이상의 회기에 3번 이상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없다. 표결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표결 후 3일 이내에 행정부로 이송된다. 행정부는 통과된 법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거부한 다음 국회로 재이송하여야 한다. 행정부가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공포된다.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에 대하여 새로이 심사에 들어가며 재적 2/3의 찬성을 얻은 경우 해당 법률은 다시 행정부로 이송되어 즉시 공포된다.

17)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Honduras1.html> 4.1. 4.2 4.3 참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장

정부조직과 법제

제2장

정부조직과 법제¹⁸⁾

1. 온두라스 헌법 개관

온두라스 1982년 헌법은 전문과 제8편 제40장으로 구성된 37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부터 제7장에는 온두라스 시민의 실체적 권리와 정부의 조직과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 헌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의 집행과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헌법 제1편은 국가의 조직, 영토 및 국제조약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온두라스는 공화국이며, 민주적이고 대의제 정부임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이고 독립적이며 종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 보다 우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온두라스 헌법은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1982년 헌법에 새로이 들어온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 의하여 설립된 민주 정부를 군부 독재세력이 찬탈한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도입된 규정이다.

제2편은 국적과 시민권, 투표권 및 정당에 대하여 규정함은 물론 선거법과 선거 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Superior Elections Tribunal : Tribunal Supremo Electoral : TS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편은 온두라스 시민들의 권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제3편은 사회, 아동, 노동권, 사회보장, 의료, 교육, 문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영장제도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는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8) <http://www.nyulawglobal.org/globalex/Honduras1.html>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제4편은 대법원(Supreme Court of Justice)에 의한 위헌법률심사 및 헌법소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편은 정부 조직과 법률 제·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각종 부처와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은 물론 법률의 제정, 개정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급 기관은 물론 입법부 소속의 독립기관인 감사원(Superior Accounts Tribunal : TSC, Comptroller Office)과 행정부패감시청(Directorate of Administrative Probity)에 대한 규정도 있다. 또한 온두라스 검찰청(th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각 부처, 주 및 지방정부 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기관의 설립을 위한 지침 또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99조는 국가개발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30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단체, 연맹 또는 협회 등을 설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5편은 최고사령관, 육군, 공군, 해군, 공안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군 관련 기관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6편은 생산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국부 및 국가 수입에 대한 사회적인 공정한 분배 원칙을 천명함은 물론 생산 수단의 조화로운 공존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9조는 온두라스 정부는 합리적 계획 하에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편은 외환 및 금융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개혁, 조세 체계, 공중보건 및 국가 부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편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헌법 불가침의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온두라스 헌법은 연속되는 2회기 이상에서 의원 제적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규정, 정부 형태, 영토 및 대통령과 관련한 재선 금지 등과 같은 규정은 개정할 수 없다.

2011년 2월 온두라스 의회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체 행정권과 법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특별개발지역(Special Development Regions (“las Regiones Especiales de Desarrollo” : RED)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헌법 재판

온두라스 헌법은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고한 절차적 심사를 통하여 헌법 위위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절차 또한 확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신보호영장제도는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장전(writ of amparo)을 통해 정부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온두라스 헌법 제184부터 제186조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하여 일반 위헌과 특정 사안 위헌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위헌은 그 결정의 효력이 모든 법체계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사안 위헌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위헌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82조에 규정된 인신보호영장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8조에 규정된 권리장전은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위헌 심판을 제외하고, 인신보호영장제도, 권리장전, 특정 사안 위헌 심판 등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만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률이나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해당 청구인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폐기하거나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온두라스에서 헌법 재판을 수행하는 경우 헌법 뿐만아니라 헌법정의법(Ley de Justicia Constitucional (hereinafter Law on Constitutional Justice)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헌법 절차, 헌법 이행 체계, 헌법 재판 제기 및 심판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온두라스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a speci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Justice)를 두어 헌법 재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 재판부는 헌법정의법 제7조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3. 지방 자치

온두라스는 18개의 도(Departments)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도지사가 수장이 되어 행정을 통괄한다. 18개의 도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지방 정부는 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재하는 지방 위원회(Municipal Council)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방자치법(Law of Municipalities, decree 134-90 of Congress)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온두라스 헌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9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은 국가 개발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상업적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세와 투자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4. 행정부

온두라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다수결로 선출된다. 온두라스 대통령은 기존에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관장하였다. 헌법에 의하면 온두라스 대통령은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내각과 협의하고 의회에 이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이행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은행보험위원회(the National Banking and Insurance Commission)를 통하여 은행, 보험, 투자 등 경제와 금융 관련 정책을 감독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농업개혁과 농촌지역의 생산력과 생산성 향상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대통령은 문맹을 퇴치하고 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을 조직, 지도, 향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은 시민들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구호를 강화하며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함은 물론 질병 예방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은, 온두라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제와 사회적 통합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통령은 내각 장관들을 통하여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sanction, veto, or promulgate and publish any laws approved by the National Congress.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하여 비준 (sanction), 거부(veto) 또는 공포 및 공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영속위원회 (Permanent Committee)를 통하여 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하거나, 일반 회기의 지속을 제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언제든지 의회에 교서(message)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반 회기가 개시되는 경우 의회에 연두교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대통령은 대법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행정감사국장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입법부

온두라스 입법부는 단원제인 의회로 대통령과 같은 4년 임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1988년 헌법 개정으로 128명의 정의원(principal deputies)과 부의원 (alternate deputies)을 선출한다. 만일 정의원이 임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의원이 그 남은 임기를 계속한다.

의회는 매년 1월 25일 개시하여 10월 31일 폐회하는 일반 회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연기될 수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통한 행정부의 요구가 있고 정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특별 회기가 소집될 수 있다. 정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가 개회한다. 상임위원회는 9명의 정의원과 그 부의원으로 구성되며 일반 회기 마지막 날에 의회에서 선출되며 차기 의회 동안 소임을 맡게 된다. 의회는 의회의 과반다수로 선출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이 이사회는 대통령이 주도하며 최소 2명의 부통령과 2명

의 장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의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상임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의회와 대통령(내각 장관을 통하여)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자신들의 관할 사항에 관한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실제로 있어서 대부분의 법안과 정책안은 행정부에 의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의회에 의하여 제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제출된 법안에 대하여 의회는 의결일 전 3일 동안 토의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한 의회 정원의 과반수로 의결된다.

법률안이 가결되면 행정부로 송부하여 비준 및 공포절차에 들어간다. 통과된 법률은 공포되어 관보에 게재된 이후 20일이 도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률안은 비준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포 절차에 들어간다.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그 이유를 붙여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회는 토론을 한 후 2/3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고 이 경우 행정부에 직접 송부하여 관보에 게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 법률이라고 밝힌 경우 이 법률안은 대법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심판을 마치기 전까지 의회에 재송부되어 재의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회가 재의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이 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해당 회기(회의, session)에서 다시 심의될 수 없다.

만일 의회가 회기(session) 마지막 날에 법률을 의결하였고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의회로 하여금 거부된 법률을 송부 받은 후 1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다음 의회 회기가 시작된 지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예산법, 헌법 개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결정, 행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시령령(decrees) 등 의회의 특정 법률이나 결의안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대통령은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의회는 행정부의 제안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일반 예산을 매년 결정할 책임을 부담한다. 의회는 공공 수입, 조세 부과, 평가 및 공공 요금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는 감사원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 공공지출에 관한 공식 계좌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가 제출한 공적 신용과 관련된 차입금 및 기타 관련 계약 등에 대하여도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의회 내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원(the Superior Accounts Tribunal (Comptroller Office))과 행정감시청(the Directorate of Administrative Probity)이 있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에 대한 사후 회계감사(the post-auditing of the public treasury)를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적 기금과 자산을 운영하고 이러한 기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계좌를 감독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 기관, 가구들의 재정 운영에 대하여 감독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부가 공공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회계 장부를 검사하며 그 결과를 이회에 보고한다. 행정감시청은 공무원과 정부 부처 근로자들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계좌를 감독하고 있다.

6.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평화법원(justices of the pea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법원의 판사와 공무원은 물론 검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위헌법률심사 권한이 있고, 의회가 탄핵을 소추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법부 활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생성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각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형사, 민사, 노동의 특별부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이 있는데 고등법원은 민사, 상사, 형사, 노동, 행정 및 헌법 사건 등에 관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

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최소한 2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방법원은 온두라스 전체에 산재하여 있는데 일심법원으로서 기능한다. 지방법원은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은 물론 노동, 가정, 행정, 가정폭력 및 청소년 사건 등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1세 이상으로 법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은 평화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각 주(department)의 주도 및 인구 4000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2명의 법관을, 인구 4000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는 1명의 법관을 두고 평화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화법원 판사는 수사 영장 등 형사사건과 약식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평화법원 법관은 21세 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평화법원 판사를 임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편향성인바,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는 등 무자격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7. 법무장관

법무장관은 온두라스의 사법체계와 사법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상 온두라스의 대리인이다. 법무장관과 부장관은 의회에 의하여 4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대통령과 의회와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법무장관은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청

검찰청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며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법이나 법무장관에 소속되지도 않는다. 검찰총장은 의회에서 임명된다. 검찰청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부와 무관하다. 1994년 1월 6일 법령 제228-93호에 의하여 검찰청이 창설되었다. 검찰청은 온두라스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범죄와 중죄

를 소추하는 것이다.

검찰청은 1)온두라스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2) 사법적 정의의 실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범죄 환경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3)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권리와 헌법적 보장사항을 수호하고 완수하며, 4) 모든 형태의 부패와 마약 밀매에 대응하고 5) 재산에 대한 소유권, 공공 이용을 위한 국가적 물건의 통합, 공용수용, 국가 자산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증명하며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6) 환경, 생태계, 소수인종, 문화의 보존, 고고학적 유산과 기타 공적 이해 관계에 대한 협력적 활동의 수행, 7) 기초생활물품 및 공용 시설에 대한 보호, 8) 공공 및 민간단체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의 전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검찰청은 온두라스 국내에서 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개인과 법인은 성별, 종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검찰청을 이용할 수 있다.

검찰청을 이용함에 있어 변호인이나 법률 자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 문제로 검찰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않는다.

8. 인권담당관(Human Rights Commissioner)

온두라스에는 시민의 통합과 안전을 보장위하여 옴브즈만으로 활동하는 국가인권담당관이 있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와 시민의 직접적이고 대체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인권담당관은 1)헌법 및 온두라스가 승인한 인권선언과 관련 조약 및 협정에 규정된 인권 및 보장사항을 보호하며, 2)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과 감시를 실시하고, 3) 정부, 담당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며, 4) 행정청의 행위와 결정이 온두라스가 승인한 인권에 관한 조약, 협정 및 국제 협약 등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5)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 제안 및 자문을 실시한다.

인권담당관은 1)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혹은 2)권한의 남용, 법률상의 실수, 과실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 또는 3)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인권담당관은 가정폭력과 같이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나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9. 행정의 집행과 분쟁의 해결

행정부와 그 소속 공무원의 관계는 공무원법(Civil Service Law)에 의하여 규율된다. 외무부 및 법원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법(specific Civil Service Laws)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은행보험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같은 자치적인 분권화된 국가의 기관들은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청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한편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된 기관, 자치기관 또는 반자치기관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행위 또는 결정한 사항에 대한 소송은 행정법원(the Contentious-Administrative first-instance court)이 관할을 맡는다. 행정적 성격을 갖는 계약이나 양허에 관한 분쟁 또한 행정법원이 관할을 담당한다.

제3장 온두라스 주요 정책 집행 법제

제1절 온두라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절 온두라스 통신제한법

제3절 온두라스 사회보호법제

제4절 온두라스 전자서명법

제3장

온두라스 주요 정책 집행 법제

제1절 온두라스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요

온두라스 헌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⁹⁾ 즉, 온두라스 헌법 제182조는 개인에 대하여 사적이건 공적이건 전자적이건 수기로 작성된 것을 불문하고 개인의 명예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위해를 미치는 모든 기록이나 파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데이터의 전송이나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수정,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기밀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삭제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한은 취재원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두라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에는 우선 민사등록법(Law of the Civil Registry : (Article 109, Decree 62-2004)이 있는데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등 민사적 사항의 등록에 필요한 공적 개인정보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²⁰⁾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에 관한 법(Law for Transparency and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Article 3.5, Decree 170-2006)은 ‘비밀’로 분류된 사항 이외의 정보로서 모든 공적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¹⁾

19) 이하의 내용은 DLA Piper, Data Protection Law of the World(2016), pp.177-180.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20) 민사등록법(Decree 62-2004) 제109조.

아울러 동법은 위 헌법 상 보장된 개인정보 관련 권한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도덕적 혹은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전송(transmission)을 금지하고 있다.

Rulings on the Law for Transparency and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Article 42, Accord 001-2008). Provide a definition of databases containing personal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requires data subject consent, prior to the use of it by any third party.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Rulings on the Law for Transparency and for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 Accord 001-2008)은 개인의 기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의 제3자 사용 이전에 해당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²²⁾

2. 정의

민사등록법은 공적개인정보(Public Personal Data)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성명, 주민 번호, 생년월일, 사망일, 성별, 거주지, 직업, 국적, 시민권 여부 등이 민사등록과 관련된 공적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에 관한 법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1) 인종, 2) 신체, 도덕 또는 감정적 특징, 3) 주소, 4) 전화번호, 5) 이메일 주소, 6) 정치 성향 및 이데올로기, 7)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8) 의료, 9)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10) 개인 또는 가족 유전, 11) 기타 명예, 개인 혹은 가족의 프라이버시 또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민감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온두라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민사등록청(National Civil Registry)과 공적 정보접근청(Institute for the Access to Public Information)이 각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21)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에 관한 법(Decree 170-2006) 제3.5조.

22)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에 관한 법 시행규칙(Accord 001-2008) 제42조.

정부기관, NGO 단체, 공적기금을 받는 단체, 세금 면제를 받는 노동조합 등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공적 접근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적 접근청은 위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개인, 회사 위 정보제공 의무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정보²³⁾는 개인의 동의²⁴⁾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1) 통계나 과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이 경우에도 특정인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2) 정보제공 의무 기관 사이에 정보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들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3) 법원의 명령, 4) 개인정보가 제공된 개인이나 회사가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목적에 필요한 경우(그렇지만 이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이나 회사는 제공된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이전함에 있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이전

개인이나 회사는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이전, 상업화, 매도, 유통 및 접근제공 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명확하고 직접적인 문서화된 동의가 있거나 위 ‘수집 및 처리’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23)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라 함은 특정 개인에 의하여 정부에 제공된 문서로 법률에 의하여 기밀로 정의된 것을 말한다. 비밀정보(Classified Information)라 함은 법률 혹은 정부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공적 정보를 말한다.

24) 동의라 함은 개인정보의 공개, 유포, 상업화 및 원래 목적과 다른 사용 등에 대하여 지정된 특정인에게 문서로 명백하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안조치

공적 정보접근청은 위 정보제공의무기관들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있어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온두라스 법제는 정보제공의무기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안 정책이나 보안체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특별히 기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공적 정보접근청은 모든 공적 정보, 공공기관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모든 정보, 모든 민감한 개인정보 및 법률이 기밀성을 부여한 모든 정보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6. 집행

공적 정보접근청은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의 수집에 관한 남용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공적 정보접근청은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를 권한없이 공개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부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7. 기타

온두라스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제2절 온두라스 통신제한법

온두라스 헌법 제100조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의 비밀을 포함한 통신의 평온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1. 범죄수사에 대한 감청

개인통신감청에 대한 특별법(Decree 234-2011: Decree 17-2013으로 개정됨)은 통신 감청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이다. 검찰청, 법무장관 또는 기타 정부 당국이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감청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²⁵⁾ 검찰청은 온두라스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 수호 및 대리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검찰청은 마약밀매, 납치, 조직범죄 및 부패행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혹은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감청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범죄 수사 혹은 사건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감청 영장에 대하여 먼저 신청하여야 한다.²⁶⁾

만일 국가안보 또는 사회의 일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등과 같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감청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 법은 기타 정부 당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테러, 조직범죄, 첩보 및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조사국(National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Office)이 감청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감청 영장은 형사법원(Criminal Court)로 청구되는데, 1) 감청 대상 개인의 성명, 2) 수사 대상 행위에 대한 개략적 설명, 3) 범죄 내용(위반 사항)에 대한 기술, 4) 통신 서비스 및 감청 대상 기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5) 예상 감청 기간, 6) 감청을 요청하는 검사 또는 담당자의 성명, 7) 기타 관련 정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²⁷⁾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 감청이 실행될 수 있지만, 판사는 유용성, 필요성, 적합성, 비례성 및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²⁸⁾ 법원은 영장 신청을 받은 이후 4시간 안에 그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장에는 감청이

25)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13조.

26)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14조.

27)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15조.

28)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16조.

목적으로 하는 사실, 통신 감청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감청 기간 및 필요한 경우 감청 관련 정보나 보고서의 법원 및 검찰청으로의 인도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감청 영장은 최대 3개월 동안 효력이 있으며 3개월씩 3번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²⁹⁾ 감청 영장의 연장은 처음에 신청하였던 것과 동일한 사항과 내용으로 원래 영장 기간이 만료하기 전 5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조사국 내에 통신감청단(Unit for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을 설치한다.³⁰⁾ 위 통신감청단은 모든 인가된 감청을 실행한다. 통신감청단은 통신서비스제공자(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 CSP)의 관여나 감독 없이 감청을 직접 실행하며 감청 명령 복사본을 해당 법원 파일에 첨부한다.

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감청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비밀스럽게 수행되도록 모든 자료, 기술 및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³¹⁾ 또한 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통신이 감청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말아야 한다.³²⁾ 감청이 실행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감청 절차를 감독하고 감청이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인증할 보장 판사(Guarantee Judge : Juez de Garantia)가 통신감청단에 배치되어야 한다.³³⁾ 감청의 전 과정은 법원의 비밀등재부에 기록된다.

2. 법원에 의한 통신데이터 요청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은 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통신 데이터에 대하여 최소 5년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제공자

29)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32조.

30)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33조.

31)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38조.

32)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51조.

33)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23조 및 34조.

34)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37조 및 39조.

의 법률대리인은 3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중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³⁵⁾

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쇄 또는 전자적 저장 장치로 형사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정보라도 제공하여야 한다. 실제로 법원에 의한 통신 데이터 요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영장을 통한 통신 감청의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3. 국가안보 및 긴급한 경우

국가정보법(National Intelligence Law : Decree 211-2012)은 국가정보조사국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조사국이 첩보정보 수집을 위하여 감청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위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통신분야법(Law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Decree 185-95)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존에 통신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발급된 양허, 라이선스 또는 인·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³⁶⁾ 이 법에 따른 일반 규칙(General Regulations)은 온두라스 정부 즉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동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위 권리 취소를 단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여기서 ‘국가안보를 이유로’라 함은 관련 통신서비스가 온두라스의 정치, 사회, 경제 또는 법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³⁸⁾

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같은 국가 결정에 대하여 국가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가 그 이의를 기각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³⁹⁾

35) 개인통신감청에 관한 특별법(Decree 234-2011 : Decree 17-2013으로 개정) 제47조.

36) 통신분야법(Decree 185-95) 제28조.

37) 통신분야법 시행을 위한 일반규칙 제110조.

38) 전주(前註).

39) 통신분야법(Decree 185-95) 제28조.

5. 통신분야법(Law of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 Decree 185-95)

온두라스 헌법은 제72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 제187조에 따라 온두라스 대통령은 영토의 침략, 평화에 대한 심각한 장애, 전염병 혹은 기타 재난의 경우 대통령 명령(decree)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명령에는 1) 표현의 자유 정지 결정에 대한 정당성, 2) 제한되는 구체적 권리, 3)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및 4) 동 명령의 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대통령 명령은 45일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으며 이 명령 공포의 정당화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해당 위 명령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만 위 명령의 개정 한도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 이 명령은 그러나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 명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온두라스 대법원이 판단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제3절 온두라스 사회보호법제

1. 사회보호법의 의미

온두라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반면 사용자의 사회보호 관련 비용을 증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⁴⁰⁾ 2015년 7월 2일 온두라스는 사회보호법(Social Protection Law)을 시행하기 위해 Decree 56-2015를 발표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사회보장 기여금은 2.5%에서 3.5%로 확대되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은 2015년 9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온두라스 국내 및 국제적 원칙과 관행에 근거하여 온두라스의 사회보장

40)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는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honduras-enacts-social-protection-law> 참조.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본틀을 정립하였다. 사회보호법은 사회보호기반체계(Social Protection Floor system), 사회보장시스템(Social Security system), 의료보험시스템(Health Insurance system), 근로자사고보험시스템(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system) 및 실업보험체계(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등 총5가지로 구성된 종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 사회보호 체계의 내용

사회보장기반체계(Social Protection Floor : Régimen del Piso de Protección Social)는 빈곤층 및 정부의 핵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전부 출연하는 것으로 기여금이 없는 사회보장서비스의 하나이다.

사회보장체계(Social Security : Régimen del Seguro de Prevención Social)는 기여금이 있는 것을 노령, 장애 및 생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근로자는 2.5%의 월급을, 사용자는 근로자 월급의 3.5%를, 정부는 근로자 월급의 0.5%를 부담하고 있다.⁴¹⁾ 해당 금액은 온두라스 사회보장청(Honduran Social Security Institute : HSSI)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부수적 계좌를 설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으로 출연하는 보완적 기여금을 설립하였다. 즉 이 계좌에는 근로자보상보험 체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출연하는 기금과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기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의료보험체계는 온두라스 시민들로 하여금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의료보험을 위하여 사용자, 근로자 및 정부가 기금으로 온두라스 사회보장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2.5%, 사용자는 근로자 월급의 5%, 정부는 근로자 월급의 0.5%를 의료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한다. 온두라스에서는 교통사고에 보장

41) Under the previous law, employees contributed 1.5% of their wages, the employer contributed 2.5% of the employee's wage and the Government did not contribute. These amounts might change once the Social Security Law is issued.

법(Law on Traffic Accidents Coverage)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들은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가운데 선택하여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병원의 경우 이러한 의료보험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사고보험(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 Régimen del Seguro de Riesgos Profesionales)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사고나 질병에 처하거나 혹은 금전배상을 하여야 경우에 대비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사고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실업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Régimen del Seguro de Cobertura Laboral)은 은퇴나 해고 등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 월급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출연기금은 근로자의 부수적 계좌로 지급된다. 연금해고기금관리법(Pension and Severance Funds Management)에 따라 출연기금을 관리할 연금실업기금관리청(Pension and Unemployment Fund Administrator : AFP)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이 설립되는 동안 출연기금은 민간기여금체계(Private Contributions Regime : RAP)에 따라 관리될 것이다.

3. 사회보호 체계의 운영과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한 2015년 9월 4일 이후 새로이 취업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기금은 근로자 월급의 4%에까지 이를 전망이다.⁴²⁾ 이 출연금은 개인자금 부수적 계좌로 예치될 것이며 연금실업기금관리청(Pension and Unemployment Fund Administrator : AFP)이 관리할 것이다. 모든 근로자는 AFP에 부수적 계좌를 신설하여야 한다.

기존의 근로자는 2015년 9월 4일 이후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월급의 최대

42) 이하의 내용은 Lyndsey Wheeler, 10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Honduras' Law On Social Protection, TMF Group(2015. 10. 12) 참조.
<http://www.mondaq.com/x/433792/employee+rights+labour+relations/10+things+you+need+to+know+about+Honduras+Law+on+Social+Protection>

4%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AFP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출연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은 정부로 하여금 공무원 등을 위해 출연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법(Labor Code), 민사서비스법(Civil Service Law) 및 사용자와의 합의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즉시 AFP의 부수적 계좌에 축적된 자금과 이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보호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자금과 이자의 50%만 찾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찾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민간기금체계(RAP)로부터 대부를 받은 근로자는 그 채무를 변재하기 전까지 위 출연기금을 다른 기관에 예치할 수 없다. 한편 해고가 부당한 경우 AFP는 나머지 50%에 대하여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민간기금체계(RAP)와는 달리 사회보호법은 모든 회사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10명 미만의 회사에 대하여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사회보호법체계에 따른 경우 근로자 관련 비용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보다 광범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온두라스 전자서명법

1. 통칙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은 데이터메세지 형태의 모든 종류의 정보에 적용하는 전자서명의 사용을 인정·규제하고, 전자서명에 서명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육필 또는 그와 유사한 서명과 법적으로 동일한 유효성 및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법은 계약 및 법률행위의 체결, 공식화, 유효성 및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하나 이때 전자적 방법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이터메세지나 데이터메세지에 논리적으로 추가 또는 결합된 전자서명,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자 문서의 진위성·통합성 또는 발행일의 보장 등의 부가역무제공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서명: 데이터메세지에 관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데이터메세지에 기록된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메세지에 기록되거나 첨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2) 고급전자서명: 인증역무제공자가 인증한 것으로, 명의자가 배타적인 관리 하에 유지하고 사용하여 생성됨에 따라 명의자 및 명시된 정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를 통해 모든 사후 변경사항에 대한 추적 및 명의자 검증이 가능하고 문서와 관련 책임의 통합성에 대한 부인이 불가함
- 3) 인증서: 서명자와 서명생성정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모든 데이터메세지 또는 그 밖의 기록
- 4) 전자인증서: 전자서명에 확실성 및 유효성을 부여하는 인증역무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메세지
- 5) 데이터메시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신, 텔렉스, 팩스 등을 포함하여 전자적, 광학적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
- 6) 서명자: 서명한 정보를 보유하고 본인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행위 하는 자

- 7) 인증역무제공자: 인증서를 발행하고 전자서명과 관련된 그 밖의 역무를 제공하도록 승인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 8) 승인: 지식재산권총국(DGPI)이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에 전자인증을 제공하고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명칭
- 9) 신뢰한 이용자: 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기초로 행위 하는 자

제4조(서명 방법, 동등성) 이 법의 조항은 제8조가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행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전자서명의 생성을 위한 어떠한 방법도 배제, 제한하거나 그 효력을 박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제5조(국가의 전자서명 활용) 입법부·행정부·사법부·최고선거법원·지방자치기관·공사 및 모든 공공부문의 산하기관에 대하여 내부적, 기관 간 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전자서명의 사용을 승인한다.

제6조(전자서명을 통한 행위 및 계약의 유효성)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전자서명으로 동의하거나 체결한 행위 및 계약은 종이 매체에 육필로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유효하며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행위와 계약은 법률에서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정하는 행위 및 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률이 법적조치를 정하는 모든 경우에 서면으로 간주한다.

전항에서 정하는 바는 동의 또는 체결한 행위 및 계약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법으로 전자문서를 통하여 준수할 수 없는 정식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 2) 가족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어떠한 성격의 전자 서명이든 모든 법적 효력에 대하여 육필서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7조(고급전자서명의 요건) 공적수단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에는 고급전자서명을 생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일반 규칙에 준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명력을 가진다.

제8조(전자서명의 법적 요건 및 속성) 법률로서 당사자 일방으로 하여금 통지 또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의 결과를 명시할 때에는, 전자통지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1) 해당 당사자를 확인하고 전자통지문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그 당사자의 의지의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 2) 사용된 수단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전자통지문을 생성 또는 송신한 목적에 부합하는 신뢰성을 갖출 것
 - b) 실제 사용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테스트의 지원을 통해 이 방식이 앞의 제1)호에서 정하는 기능을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

전자서명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갖추고 전 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사용 시에 서명생성데이터가 서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2) 검증 가능할 것
- 3) 서명 당시 서명생성데이터가 서명자의 배타적 통제 하에 있을 것
- 4) 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5) 정보 또는 데이터메시지와 연동되어 정보 또는 데이터메시지가 변경되는 경우 전자서명의 무효가 될 것

6) 관련 규정에 따를 것

이 항에서 정하는 바는 어느 일방이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표명하거나 전자서명이 신뢰성에 관한 증명을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서명자 및 가입자의 절차) 서명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다.

- 1)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을 받거나 인증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생성할 것
- 2)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 3) 전자서명의 사용으로 인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
- 4) 서명생성데이터가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이행할 것
- 5) 전자서명으로 생성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모든 항목 또는 인증서에 기록한 모든 항목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수준의 노력을 이행할 것
- 6) 본인의 마땅한 노력을 통해 서명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것. 이때 수신인이 전자서명의 불안전성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마땅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7) 지체 없이 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할 것

제10조(합의를 통한 변경여부) 당사자는 이 법의 예외사항을 정하거나 합의를 통해 효력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때 합의가 현행법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

제11조(특징 및 요건) 관할 당국이 인증기관으로서 운영하도록 승인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기초로 당국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자연인이나 민간 또는 공공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역무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다.

- 1) 인증기관으로서 승인 받은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경제·재정능력과 조건에 준하는 인력·법적업무준칙을 갖출 것
 - 2) 인증서의 송신·전송, 데이터메세지의 보존, 등록기록의 검색 등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전자서명의 진위성 보장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에 요구되는 능력 및 기술요소(장비 및 정보프로그램)를 구비할 것
 - 3) 인증서에 명시된 서명자와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구비할 것
- 자유형을 선고 받거나 윤리에 크게 어긋나는 죄로 직위해제를 선고 받은 자는 법적·행정적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자격박탈은 형법 또는 행정법이 그 효력에 관하여 정하는 기간과 동일기간 동안 유효하다.

명시된 조건을 갖춘 공증인은 자동적으로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승인된다. 전항이 정하는 바는 경우에 따라 공증인에게 적용된다.

제12조(인증기관의 활동)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 1)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 2) 데이터메세지의 송신 수신 간의 변경사항에 관한 확인인증서 발급
- 3) 인증된 전자서명생성역무 제공 또는 그 이용에 대한 편의성 제공
- 4) 데이터메세지의 생성·전송·수신에 관한 등록기록과 발급 이력 제공 및 이용 편의성 제공

5) 데이터메세지의 기록보관 또는 보존역무의 제공

제13조(인증기관의 의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 1) 신청한 내용 또는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것
- 2) 서명 명의자의 신원 및 그 밖에 인증하는 모든 사항 또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마땅한 조치를 도입할 것
- 3) 전자 또는 전자서명의 발송 및 생성과 인증서 및 데이터메세지 형태의 문서 보존·기록보관을 위한 보안장치를 설치할 것
- 4)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호, 기밀성 및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것
- 5) 기록된 모든 조항과 조목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
- 6) 신청 및 청구 사항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지체 없이 대응할 것
- 7) 명의자에게 생성한 전자서명이 중지되었음을 통지하는 수단을 제공할 것
- 8) 관할 또는 사법행정기관이 전자서명 및 전송한 인증서 및 일반적으로 소장 및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메세지에 관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 9) 지식재산권총국(DGPI)의 감사에 응하고 협조할 것
- 10)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증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합리적 수단을 제공할 것
 - a) 인증역무제공자의 신원
 - b) 인증서에 명시된 서명자의 인증서 발급 당시 서명생성정보에 대한 통제권 소유여부

- c) 인증서의 발급일자 또는 그 이전에 대한 서명생성정보의 유효성
- d) 서명자의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방법론
- e) 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사용의 목적 또는 유효성에 관한 모든 제한사항
- f) 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하며 효력정지되지 않은 사실
- g) 인증역무제공자가 정한 책임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모든 제한사항
- h) 이 법의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자가 서명생성정보의 효력정지를 통지할 방법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 i) 지체없이 인증서를 폐기하기 위한 역무 제공 여부

인증역무제공자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역무제공 요금) 인증기관의 역무에 대한 요금은 기관의 재량에 따른다.

제15조(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의 절차) 신뢰하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를 위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인
- 2) 전자서명이 인증서를 통해 생성된 경우
- 3) 인증서의 유효성, 효력정지 및 폐기 사실의 검증
- 4) 인증서에 관한 모든 제한 사항의 인지

제16조(일방적 종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기관은 30일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사전 예고를 통해 가입자와의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인증기관은 만료 대상 인증서를 폐기한다.

제17조(인증기관의 활동정지 처분) 승인된 인증기관은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의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3. 인증서

제18조(인증서의 내용) 승인된 인증기관이 전송하는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이외에 적어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 가입자의 이름, 주소, 거주지
- 2) 인증서에 명시된 가입자의 신원
- 3) 인증기관의 신원, 거주지, 주소 및 전자우편
- 4) 이용자의 공개키
- 5) 데이터메세지에 사용된 가입자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론
- 6) 인증서의 일련번호
- 7) 인증서의 전송, 효력정지 및 갱신 일시

제19조(인증서의 승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기관이 가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고 가입자가 수령한 인증서는 가입자가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인증서의 폐기) 인증된 전자서명의 가입자는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에 인증서의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폐기를 신청해야 한다.

- 1) 개인키를 분실한 경우
- 2) 개인키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기 상황에서 인증서의 폐기를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는 인증서의 내용을 신뢰한 선량한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다.

- 1) 가입자 또는 가입자 명의의 제3자 및 대리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3) 법인인 가입자가 청산한 경우
- 4) 해당 인증서에 포함된 어느 정보 또는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한 경우
- 5) 인증기관 또는 보안장치의 개인키가 인증서의 신뢰도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6) 인증기관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 7) 사법적 명령 또는 관할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제21조(등록기록 보존의 종료)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등록기록은 개별 법적행위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 요구하는 종료 시점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4. 전자서명 가입

제22조(가입자의 의무) 가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가진다.

- 1) 인증기관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취득하거나 인증기관인 승인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생성할 것

- 2)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
- 3) 전자서명을 통제·관리할 것
- 4) 지체 없이 인증서의 폐기를 요청할 것

제23조(가입자의 책임) 가입자는 인증기관에 제공한 정보의 허위사실, 오류 및 누락과 가입자로서의 의무를 미준수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승인당국

제24조(승인당국의 기능) 재산권청(IP) 산하의 지식재산권총국(DGPI)은 법적 승인당국으로 활동할 권한을 가지는 산하기관이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이행한다.

- 1) 국내에서 영업하는 인증기관의 허가
- 2)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역무제공의 기능 및 효율성 감시
- 3) 인증기관에 기술감사 시찰 이행함
- 4) 인증기관 승인에 대한 취소 및 정지
- 5) 인증기관이 역무제공에 관한 의무사항을 미준수 시 제재 부과
- 6) 인증기관이 법적형식을 준수하지 않은 인증서를 발행할 경우 인증서 폐기명령 부과
- 7) 인증기관의 전자서명에 관한 인증서 발행
- 8)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 제한적거래관행, 불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헌법 및 법률 조항의 준수여부 감시
- 9)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에 대한 적절한 이행 관련 지침의 전달

6. 특별제도

제25조(책임) 인증기관은 그 행위의 이행에 있어 전자서명의 인증서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것으로 인해 발행하는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인증기관이 마땅한 노력을 기울여 행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제26조(제재) 해당 절차 및 보호권을 감시하는 지식재산권총국(DGPI)은 인증기관에게 과실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1) 개인적 서면경고
- 2) 기관에게는 최대 2천개월의 현행 월법정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벌금, 인력에게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승인·집행·유서한 것으로 확인된 관리자 및 대표자에게 최대 300개월의 현행 월법정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벌금
- 3) 위반한 기관의 모든 또는 일부 활동 즉시 중지
- 4) 위반한 인증기관의 최대 5년 간 직·간접적 인증기관역무 제공 금지
- 5) 인증기관 승인의 완전한 취소

상기 제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 및 위반자가 경우에 따라 자행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7. 기타 조항

제27조(외국 전자서명 인증서의 인정) 온두라스공화국 밖에서 생성 또는 이용되는 모든 전자서명과 온두라스 내에서 생성 또는 이용된 서명이 동일한 신뢰성을 나타내는 경우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제28조(표시를 통한 삽입) 당사자 간 반대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데이터메

세지에 내용의 일부로 삽입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침·법규·표준합의·조항·조건·정의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 데이터메세지에 표시되어 삽입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 간 그리고 법률에 따라 이 표시는 데이터메세지에 자체에 삽입되어 있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제29조(조사의 기능 및 시행령) 지식재산권총국(DGPI)은 이 법이 고시되는 날로부터 3개월 간 인증기관이 이행하는 활동에 대한 조사·통제·감시를 계획한다. 동일한 기간 동안 해당 시행령을 제정한다.

제30조(발효) 이 법은 관보 “라 가세타(La Gaceta)”에 고시된 후 시행된다.

제4장 온두라스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제1절 개 요

제2절 온두라스 투자증권 및 보호법

제3절 온두라스 민간투자진흥법

제4장

온두라스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제1절 개요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관광산업을 증진하고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베이아일랜즈자유지역법(Law of the Bay Islands Freezone) 및 투자증진과보호법(Law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등이 최근 통과되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안하고 있다.⁴³⁾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자국민 투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 통신, 항공, 어업과 수렵,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개발, 임업, 교육사업 등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온두라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예 따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⁴⁴⁾

이에 따라 온두라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도 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회사설립에 있어 제한이 없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자본소득, 배당, 로열티,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대가, 투자 총액 등을 외환이나 외국 증서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한

43) PwC, Doing Business : Honduras(2013), p.15.

44) Id.

외국인투자자는 온두라스 내국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온두라스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민관합작진흥법(Law for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자회사, 협력회사, 합작회사 등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상업적 위험은 물론 비상업적 위험(예를 들어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까지도 제한없이 적용되는 보험에 대하여 온두라스 국내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 및 자산에 대한 보장이나 보험도 인정된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투자 프로젝트의 운영의 지속성 및 투자 개선에 대한 상황 또한 보장된다.⁴⁵⁾

2. 외국인투자의 형태

온두라스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보호법(Law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를 제정하였다.⁴⁶⁾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재와나 용역의 생산 혹은 법률상의 이익 생성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온두라스에 유입된 모든 형태의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신, 제조업, 마킬라 산업(Maquila 산업 : 보세 가공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지만, 1)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독성 폐기물, 위험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 사업, 2) 공중 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국가안보와 국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제한된다.

3.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제

가. 공정거래법

2005년에 공정거래보호진흥법(Law for the Defense and Promotion of Competition)이

45) Central Law(2014), p.21(Law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46) PwC, Doing Business : Honduras(2013), p.17.

Decree 357-2005로 공포되었다.⁴⁷⁾ 이 법의 시장 기능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 복지를 위하여 자유 경쟁을 진흥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정거래보호진흥위원회(Commission for the Defense and Promotion of Competition)가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보호진흥위원회는, 1) 직권으로 또는 요청에 따라 법안, 규칙, Decree 또는 시행 합의서 등에 대한 의견 및 권고의 제시는 물론 결정, 합의, 협정, 국제조약 기타 이법의 시행과 관련된 정부 활동 등의 수행, 2)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나 관행에 대한 조사 및 그러한 행위나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및 적절한 제재조치의 적용, 3) 경제 집중도에 대한 평가와 조사 및 시정 조치, 4) 이 법과 배치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조치, 5) 신청인, 증인 및 전문가에 대한 청문, 6) 이 법의 적용과 관련된 규정의 도입, 7) 시장의 구조와 행태에 대한 연구 실행, 8) 법원이나 행정 당국의 요구에 따른 의견의 제시, 9)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 10) 기타 이 법에 따른 의무이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소비자보호 법제

온두라스는 2008년부터 국가경제개발부에서 소비자보호원(General Directorate for Consumer's Protection)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⁴⁸⁾ 소비자보호원은 제조업자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소비자로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부당한 회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분쟁해결 절차

온두라스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 절차를 이용하거나 공인된 중재센터에서의

47) Central Law(2014), p.26-27(Antitrust Law).

48) Central Law(2014), p.27(Consumer Protection).

중재 또는 화해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⁴⁹⁾ 또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 협상, 조정 기타 방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도 인정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사법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은 매우 복잡하지만 성공적이다. 화해 또는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며 성공률은 90%에 이른다.

라. 환경 법제

온두라스의 환경 관련 법제는 1993년부터 시행된 일반환경법(General Environment Law)과 그에 따른 환경청 규칙(SINEIA)이 있다.⁵⁰⁾ 위 일반환경법은 2010년에 개정되었다.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 및 공공 투자는 에너지지하자원환경부 장관의 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보호지역 혹은 보호산림지구 등과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는 위 에너지지하자원환경부의 감독을 받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허가가 발급된다.

마. 금융 법제

1995년 국가은행보험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은행보험위원회(The Bank and Insurance National Commission : CNBS)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⁵¹⁾ 온두라스에는 국가의 자금이 투여된 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은행보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온두라스 중앙은행(the Honduras Central Bank : Banco Central de Honduras)에 의하여 통제된다.⁵²⁾ 중앙은행은 주요 정부은행에 대한 감독과 각 은행법의

49) Central Law(2014), p.27(Settlement Dispute).

50) Central Law(2014), p.27-28(Environmental Regulation).

51) Central Law(2014), p.28(Financial Market Structure).

52) PwC, Doing Business : Honduras(2013), p.19.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이자율 결정 및 외환 규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상법 및 “보험과 재보험기관법(the Insurance and Re-Insurance Law)”에 의하여 보험제도가 규제되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국가은행보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바. 지적재산권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온두라스에서, 비록 지적재산 등록이 실시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⁵³⁾ 1999년 산업재산법(the Industrial Property Act)가 시행되고 관련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DR-CAFTA 협정에 서명한 이후부터는 온두라스에서 상표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온두라스는 또한 지적재산과 관련한 베른협약과 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사. 회계제도

온두라스는 외국인투자 유치와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국의 회계 기준을 변경하였다.⁵⁴⁾ 즉 회계감사원칙법(Law of the Accounting and Audit Rules : Decree 189-2004)은, 금융과 회계정보에 대한 적절한 준비, 제공, 검토 및 인증을 위하여,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법적 기본틀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온두라스는 국제금융보고기준(the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 : IFRS) 및 국제감사기준(International Auditing Standards : IAS)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회사들은 온두라스 회계 규범에 따라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기술된 금액 등은 온두라스 화폐 단위(Lempia)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회사들은 다른 나라 화폐단위로 조정하여 표시할

53) Central Law(2014), p.29(Intellectual Property).

54) PwC, Doing Business : Honduras(2013), p.19.

수도 있다. 재무제표는 매년 작성되어 제공되어야한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매년 이를 공표하고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파트너십, 은행, 보험 회사 등은 매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온두라스 투자증진 및 보호법

1. 투자자 보호

가. 예비조항

제1조 국내외 투자의 유인, 증진 및 보호는 국가의 주요관심사로 여겨지므로 이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시설과 보장이 주어진다.

온두라스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무형의 자산을 획득한 모든 국내외 개인 또는 기업은 본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이 법의 목적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정의에 따른다.

1. 자산: 이익창출이나 소유권획득이라는 단일목적으로 얻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유형 또는 무형의 유산. “자산”의 개념내에서 이해되는 것은 자본출자, 금융상품, 주식, 지식재산, 유가증권 또는 그 외 미래이익창출을 위하여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자원의 이전을 포함하는 기타의 것이다.
2. 중재자 또는 중재재판소: 판사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중재절차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당사자들에 의해 부여받는다.
3. 투자: 투자자에게 유형이나 무형 재산을 구성하는 또는 투자자가 직·간접적으

로 통제하는, 출자자본이나 기타 자원, 수익이나 이윤기대 또는 보유자에 대한 위험전제와 같은 특징이 있는 투자의 성격을 가지는 자산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한 합법적 획득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식은 사업, 주식, 자본과 기타 경영참여와 동등한 형태, 토크계약, 건설, 관리, 생산, 양허, 수익공유, 공공민간합작투자과 이와 같은 것, 기타 유·무형의 지적재산,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임대, 모기지, 유치권과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4. 투자자: 법적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내외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투자 보유자
5. 외국인 투자: 물품의 생산이나 서비스 또는 자본을 이전한 사람들의 합법적 사용 창출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행해지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모든 종류의 자본 이전.
6. 연구와 개발: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의 신규적용 발견과 후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활동
7. 공공수용: 작위 또는 부작위로 투자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수익의 환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단일행위. 투자를 국영화하거나 아니면 명의나 소유권의 공식적 이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의 작위나 일련의 행위가 공식적인 명의나 소유권의 이전없이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질 때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수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특별 조건은 법률로 결정된다.
8. 자유사용 화폐: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화폐는 i) 국제거래에서 실제로 지불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화폐, 그리고 ii) 주요환전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9. 기술이전: 상품개발, 과정이행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또 다른 또는 그 외

사용(수급자)을 위하여 자연인이나 법인(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체계적인 지식의 이전

제3조 다음 부문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1. 유독, 위험 또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활동
2. 공공보건에 영향을 주는 활동
3. 헌법 제337조에 따른 소규모 산업 및 상업
4. 헌법 제292조에 따른 제조, 수입, 유통 그리고 무기, 탄약 및 유사종류의 판매

제4조 헌법과 법률에 있는 보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장된다.

1. 이 법에 확립된 제한이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
2. 온두라스에 투자를 한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비적용,
3. 자신의 선택에 따라, 편의시설제, 자본이득, 배당금, 로열티, 자신의 기술 사용과 이전에 대한 보상, 투자 총액을 국제통화 또는 자본이전할 수 있는 권리,
4.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과 동일조건으로 국가재정시스템 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5. 공공-민간합작투자촉진법에 확립된 요건을 제외한 사회의 지분구조에 외국인 투자의 자유참여, 그리고
6. 자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나 합작회사를 제약없이 설립할 권리.

나. 의무와 혜택

제5조 투자자들은 국내외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약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국내외 회사와 위험보험 계약을 제약없이 맺을 수 있다.

1. 배송
2. 상업비행
3.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되는 상품: 운반된 상품, 상품을 운반하는 차량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책임
4. 수송중인 상품, 그리고
5. 재보험 및 재재보험

제6조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추가적 보호가 인정된다.

1. 부동산 명의를 대한 보험 또는 보증,
2. 분쟁방지제도
3. 개선에 대한 투자회수 및 부동산분쟁 중 지속되는 프로젝트의 계속에 대한 보증 제도

제7조 투자할 의향이 있는 또는 부동산 물권획득에 투자하고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재산명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보증을 구입할 수 있다.

명의보험이나 보증은 이런 활동에 전문적으로 참여한 국내 또는 해외, 기업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명의를 위한 보험이나 보증의 획득은 퇴거의 경우 국가 배상권을 배제하며 계약에 명시된 조건으로 강제할 수 있다.

3. 분쟁방지제도 절차

제8조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또는 개발투자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유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재산에 대한 장래 분쟁을 예방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명령은 없다. 수혜자는 투자 개시를 위하여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취소된다.

제9조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된다.

1. 그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별목, 빌딩 건축, 작물재배와 기타 이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과 같이 소유지에서만 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대신하여 평온히, 평화롭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간섭없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재산세를 지불함으로써, 엄격한 소유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유 의도를 표명할 수 있는 사람
3. 재산 등기소에 등록된 재산명의를 보유한 사람

제10조 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은 국가투자협의회 기술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대중매체 공지와 30일동안 보호되는 현장 옥외광고로 알려져야 한다. 발표는 이 절차의 종료로 재산에 있을 수도 있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 제3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 사유지에 대한 분쟁을 금지하는 것임을 표명해야한다.

제11조 상기 조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 없는 제3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재산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건과 만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소유권이 없는 제3자는 투자자에 의해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의 보상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권리도 소멸된다.

제12조 제3자가 그 재산 자체에 가질 수도 있는 재산권의 종료시, 그 재산에 대해 재산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그 어떤 제3자도 그것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것에 대한 물권을 청구 또는 획득할 수 없다.

제13조 국가투자협의회 기술사무국은 이 절차가 준수되었고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재산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4조 국가투자협회의 기술사무국에 의해 발행된 분쟁예방제도에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명시한 결의안이 등록되면, 재산 보유자와 법원 명령에 의한 자발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이 보증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등록도 적절할 수 없다.

제15조 국내외 투자의 유치, 촉진 및 보호가 국가의 주요관심사이므로, 이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자개발 의도가 있는 그리고 그 재산의 가치가 미화 50만달러(US\$ 500,000.00)와 동등한 현지통화가치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분쟁은 다음 명령에 따라 이러한 절차들을 제출한다.

- a. 직접 해결
- b. 조정, 그리고
- c. 조정과 중재법 조항에 따른 중재

사전예방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쟁에서 모기지, 예금 또는 적어도 재산의 시장가치가 100%인 채권을 지불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관할법원은 상기 조항에 확립된 사전절차를 다 거쳤다는 입증 없이 어떠한 소송도 진행하지 않는다.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자비로, 분쟁 중 국가투자위원회(CNI)에 재산에 대한 신탁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분쟁중인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완공보증제도

제17조 분쟁중인 재산에 개발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의 결정은 국가의 이익이다. 제도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하다.

1. 개발자가 개발에 필요한 인가와 면허를 가진 경우,
2. 개발자가 그것에 재원을 조달할 자본이 있는 경우,
3. 개발자가 동일한 건설업을 시작했던 경우, 그리고
4. 프로젝트의 건설이 시작되었을 때, 소유권이 없는 제3자가 그 개발 중인 재산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을 시작한 경우.

제18조 상기 조항에 나열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국제투자협의회 기술 사무국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사항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 프로젝트에 대한 신탁의 구성
 - a. 프로젝트의 계속
 - b. 투자회수, 그리고
 - c. 건설된 또는 건설중인 것의 판매나 임대
2. 재산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가 제기한 사법 또는 행정소송은 그 국가의 상공회의소에 있는 중재센터에서 그곳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중재로 해

결된다. 개발중인 재산의 소유권 분쟁중인 제3자가 자신의 사법적 또는 중재 소송에서 패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발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라. 특별보증 및 분쟁해결메커니즘

1) 안정협정

제19조 총 미화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라 안정계약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1. 온두라스에 공식적으로 설립된 또는 설립될 기업에 자본기여
2. 총 주식의 50%에 대한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 획득, 또는,
3. 공공민간 합작투자

제20조 안정계약은 서명할 때 그리고 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 투자자에게 국내와 지방 세제에서 세금이 오르거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제21조 공공민간 합작투자 유형에 따른 투자를 제외하고 「삼림, 보호구역 및 야생동물 법」의 조항에 따라 안정계약의 최대기한이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기간은 계약 조항에 포함될 수 있다.

2) 투자관련 분쟁해결

제22조 투자자들은 국제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미주협약(파나마 협약), 그리고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에 일어난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협약) 그리고 온두라스가 비준한 투자상호보호조약의 조항에 따라 내려진 판정의 전부 인정을 보장받는다.

제23조 온두라스에서 서명된 외국과 국내 투자자간 또는 첫번째(the first)와 국가간 계약에서 외국 관할에 제출하기로 하는 합의는 합법적인 것으로 선언된다.

제24조 국제조약에 설립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 법의 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국내 또는 외국 투자 보유자와 국가 간 분쟁은 가급적 협상, 조정 및 중개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협상과 조정으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설립 또는 후속적으로 그것에 동의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제정협정과 내부규칙에 따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의 국제 중재.
2. 국가 조정 및 중재센터 중 하나에서의 국내 또는 국제 중재.
3. 일반법원

제26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설립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의 투자자들은, 협상과 조정을 통해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1. ICISD추가기관을 이용한 국제중재
2. 국가 조정 및 중재센터의 국내 또는 국제중재
3. 일반법원

일단 상기 정해진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선택된 수단은 투자자와 국가간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중재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특정센터에 제기된 소송 당사자들은 의무적으로 그 센터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제27조 협상이나 조정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자연인이나 법인은 이 법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국가와 자신들의 차이를 국가에서 승인한 모든 중재센터에서 또는 그들이 적당하다고 보는 정규법원을 선택하여 국내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특정 센터에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들의 그 센터의 규범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일단 상기 정해진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선택된 방법은 투자자와 국가간 합의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제28조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의 경우, 「조정 및 중재법」 조항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제29조 투자자들에게 더 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과 관련된 갈등은 당사자간 중재합의 협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1. 주주들간의 분쟁
2. 주주들 사이에서 투자자 분쟁
3.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4. 대의권, 대리 또는 유통계약과 관련된 분쟁.
5. 「경쟁 방어 및 촉진법」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반경쟁적 행위 그리고/또는 불공정경쟁에 관한 분쟁
6. 부동산 재산에 대한 분쟁

이러한 경우 중재가 시원적 해결방법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중재합의행사는 위에 언급된 경우 소송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

이 합의한다면, 이 권리를 포기하고 정규법원에 갈 수도 있다.

제30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자는 각 센터의 공인된 중재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될 것이다.

중재자 선택의 상이한 절차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했었다면, 투자자-국가 중재 둘다에서, 국내인지 외국인지와 상관없이 투자자간 중재에서처럼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중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외국인 중재자 지명의 경우, 개별 조정 및 중재 센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고결성, 학문적 소양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고 또한 국제적 명성 분쟁 대안해결 센터에서 중재자로 공인된다. 모든 경우에, 분쟁에서 온두라스 법과 관련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중재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온두라스인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상호합의를 통해, 중재과정에서 사용할 언어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경우,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인어인 것으로 이해된다.

제31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 및 중재센터에서 개시된 중재소송은 온두라스의 조정 및 중재법에 확립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규정과 내규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투자관련 중재절차는 형평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 장에 따른 중재소송에서 내려진 판정에 항소를 고지한 자는 항소의 공식화와 함께 재판의 결과를 통합한다. 항소 거부 또는 포기의 경우, 고지를 한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마. 세제혜택

제32조 운영을 개발하는 곳에서 또는 활동을 개발하는 지역에서 그리고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를 통한 행정부에 의해 우선권이 선언된 새로운 프로젝트나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이 장에 명시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려중인 우선이익, 투자계획, 활동 및 지역의 선언이 행정부와 일치한다. 운영이 달려있는 투자를 계획하는 회사는 국가투자협의회 기술사무국에 이 목적을 표명하면서 우선이익선언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투자프로젝트의 적격성이 인정된 기업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인되고 부여되어 지불되거나 발생한 사전운영경비는 소득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년까지 분할상환될 수 있다.

1. 시장성이 있는 상품 그리고/또는 국내와 국제수준에서 상업적 목적의 특허출원의 연구개발동안 발생한 지출.
2. 조사와 상품개발 또는 특정 기술 목적으로 대학, 온두라스에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의 경쟁 및 혁신 사무소에 의해 인증된 연구 센터에 기부금으로 지불된 금액.
3. 온두라스에서 상표와 특허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
4. 연구 그리고 국내 및 국제수준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첫 5년동안 상품 홍보를 위하여 발생한 그리고 인가될 수 있는 비용.

제34조 정상감가상각이나 가속감가상각의 경우 투자자들은 법에 확립된 혜택을 받는다.

제35조 회사에서 경영참여에 부여되는 주식과 기타 혜택의 획득에 대한 옵션패키지는 노무복지산정의 효과를 위하여 혜택을 받는 직원들 급여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

2. 지역별 투자

제36조 지역별 투자제도의 목적상, 이 법에 의거하여 신규투자계획의 적격성이 인정된 회사들은 투자와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 세제혜택을 향유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부터, 신규프로젝트 또는 미화 2백만달러(U.S. \$ 2, 000,000.00)를 초과하는 액수의 확장에 투자한 회사들은 상기 확립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기간동안 개발자나 경제행위자에 의해 창설된 신규투자는 증가로 평가되고 새로운 투자에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37조 이 장에 의해 투자 프로젝트 적격성이 인정된 회사는 소득세에서 부분면제 혜택을 받는다.

홍보내역에 포함된,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는 유형 및 무형 자산에 투자된 실제액의 다음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A. 투자된 총액의 50퍼센트 (50%), 활동이나 지역을 제약으로 고려하지 않은 우선적으로 선언된 프로젝트에서, 투자의 증가라는 개념으로서만 적용될 것이다.
- B. 우선이익의 활동이나 우선이익지역에서 개발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60퍼센터 (60%), 그리고
- C. 다음 세 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70퍼센트(70%): 우선이익으로 되고 우선이익의 활동과 지역에서 수반되는 일이 수행됨.

이 조에서 언급된 면제신청의 종료기한은 15년이다. 면제비율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각 프로젝트에 부여된 점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목적상, 각 프로젝트의 면제기간은 사용된 지표보수에서 가능한 총 점수와 최대 면제 종료기한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의해서 획득된 포인트 비율 신청에 의한다.

혜택과 지표보수 적용 기간 결정 기준은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에서 상세

히 정할 것이고 내각에서 승인된 행정명령으로 발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관보인 “La Gaceta”에 발표되며 국가 투자협의회는 상응하는 면제비율을 할당받은 각 투자프로젝트의 자격을 검증할 것이다.

네 개 실행이 주요관심사 내역으로부터 경과되지 않았음을 공지하면서, 산정시 후자를 포함하는 회계소득이 생긴 실행으로부터 기간이 산정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언급된 종료기한은 4년까지 연장이 될 것이고 명령된 내용에 인용된 실행으로부터 산정된다.

제38조 상기 이 조에서 언급된 혜택은 온두라스 자원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투자자가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부여될 것이다.

제39조 지표와 점수시스템의 이행과 운영의 목적상, 온두라스기관은 기술사무국이 요청한 필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정보 조항은 그 비밀을 보호하는 현행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다.

3.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신속절차

제40조 미화 5천만달러(US\$50,000.00)에 못지 않은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이익의 대형프로젝트로 SEPLAN 또는 COALIANZA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투자는 국가투자협의회에 투자의 신속절차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승인되면, 이는 행정권으로 이전되고, 내각의 장이 온두라스 법상 요청되는 모든 승인을 포함한 협력과 운영 실현가능성의 인증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한다.

행정명령이 발해지는 이러한 절차는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제41조 운영인증서는 온두라스 법에 확립된 인가와 요건의 충족을 권한기관이 완전히

신임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은 다른 기타 요건이나 법적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긴급상황이나 국가적 필요 상황에서, 상기 조항에 설정된 액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내각의 장은 이러한 프로젝트 유형에 특별 요건을 줄 수 있다.

4. 투자촉진기관

제42조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갖으며, 법률의 지위와 유산을 갖는 공법단체로서 국가 투자협회의 창설

- a) 민간투자의 촉진과 개발
- b) 투자자의 편의와 지원을 위한 사무소 설립
- c) 국내와 국외 투자 모두에 대하여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제안의 입안

제43조 국가투자협회 이사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공공부문은 대통령이 지명한 세 명의 장관.
2. 민간부문은 온두라스의 국가사업협의회(COHEP)에 제안된 열 명의 지원자 중 대통령이 지명한 네 명의 대표.

공공부문 대표의 경우, 산업 및 상업부는 소규모기업체(MIPYMESs)의 차관을 대신하는 한 명 이상의 대표를 지명할 것이다.

민간부문대표의 경우, 대표 중 한명은 소규모기업체(MIPYMESs)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지명과 순환의 연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제44조 국가투자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에 의해 수집된 영토 및 전략적 정보에 주로 기반한 정책, 전략 및 국가투자계획이 내각에서 승인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정책과 국가투자계획은 해마다 개정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투자계획의 정책과 전략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협의회는 필수적으로 COALIANZA, 개발제도의 특별지역과 대외협력(SEPLAN)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2. 온두라스에서 투자 우선부문의 목록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을 정의하고/또는 SEPLAN과 부문별 정부단체와 협력하여 매년 업데이트
3. 해외에서 온두라스의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주요 부분으로써 국가 이미지의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기술사무국을 통해 개발, 조정, 고무 및 육성한다. 부문별 국가단체는 각자의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 홍보노력을 위하여 국가투자협의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4. 온두라스를 투자목적지로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규정에 제시된 조항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다른 국가나 외국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5. 운영을 위해 필요한 허가와 면허 획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의 촉진을 계속적으로 장려
6. 잠재적으로 투자에 매력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무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정부정책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력하여 일하고 전 세계에 있는 온두라스 외교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7. 투자자를 위한 단일 콘택포인트의 관리, 행정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공회의소나 기타 단체와 협력

8. 이 법에 규정된 세제혜택의 부여를 재정부장관과 협력하여 권한부여
9. 안정계약을 승인하고 이 법의 조항에 따른 서명과 승인을 위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0.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 그리고 상법, 국제투자 및 기타 관련 원칙을 연구하는데 헌신하는 기타 관련 국제기구에서 온두라스의 회원자격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단체역할을 한다.
11. 이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할당될 수 있는 모든 그 외의 것들.

국가투자협의회는 필요시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신들의 임무의 품질성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는데 요구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할 권한이 있다.

제45조 국가투자협회의의 활동,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투자협회의는 경쟁을 통하여 선출될 사무국장이 이끄는 기술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국가투자협회의 기술사무국은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직원을 갖는다.

사무국의 기능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확립된다.

제46조 기존투자의 영속성과 확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투자협회의는 투자자들의 개발과 확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하며 투자설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감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는 투자자료를 유지해야하고 회사의 이사와 관련된 정부단체와 영구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사무국은 투자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 단체를 창설할 또는 기존 단체와 서비스를 계약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5. 경과조항

제47조 생산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과 기술융합에 투자를 장려하는, 그리고 수출지역에서 운영하는 수출기업의 가치사슬에 국내 농업 중소기업(MIPYMEs)과 국내 농산물 생산자, 개인 또는 단체의 포함을 촉진하는, 국내 및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관련산업 수출지역을 창설. 이 지역의 투자자들은 현행법에 설립된 동일한 혜택과 보장을 누린다.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는 국가 비전 및 국가계획법의 틀 안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 방법, 요건 과 범위에 관한 특별 규정을 상세화할 것이다.

제48조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 허가 및 등록 발급을 위하여 온두라스에 있는 온두라스 국적 또는 거주자 대표의 지정을 요구할 권한이 어떠한 기관에도 부여되지 않는다. 금융부문, 평가기관, 자금송금회사, 협력단체, 육상교통회사, 어업관련 회사, 세관 및 상업활동을 인가받은 외국회사와 같은 특별규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는 이 조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제49조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에서, 선택과정에서 명성과 경험이 인정된 회사만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함되는 한정목록에 있는 참여자 목록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공공민간 합작투자촉진위원회(COALIANZA)가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량적인 방법 기간을 감소하면서 대통령은 공공민간합작투자의 메카니즘을 통해 국가이익의 투자프로젝트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또한 외국단체가 포함된 공공민간합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협정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경우, 이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합법이고 COALIANZA로부터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기업은 고문으로 활동할 것이다.

공공민간합작투자촉진위원회 (COALIANZA)는 공공민간합작투자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 자금 조달 및/또는 운영을 위해 수탁자 또는 수탁자 협회와 장기신탁

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신탁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투자자들이 공공민간합작투자의 재원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신탁은 채권을 발행 및/또는 사적으로나 주식으로 보유하고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제50조 국가투자협의회는 국가와 안정 계약을 맺은 투자자에 대한 판매 또는 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에 대해 관리 수수료 및 유지비로 0.25%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해당 수금액은 국가투자협의회와 공공민간합작투자증진위원회(COALIANZA)간에 매년 균등하게 배분되는 신탁의 일부가 된다.

수익이사(DEI)를 위한 국가투자협의회와 COALIANZA의 신탁으로부터 공인된 기금은 안정계약의 관리 및 모니터링 단체를 창립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와 공공민간합작 계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제51조 이 법에 언급된 협상, 조정 및 중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정해진다.

제52조 개인과 국가가 개입하는 또는 개인간 전자거래 실현을 위한 전자서명의 사용은 국내은행 및 보험위원회(CNBS)에 의해 요구되는 보안기준에 따라 인가된다.

전자수단으로 서명된 계약은 문서와 수기서명을 사용하여 가입된 사람들에게 유효하다. 법원은,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가입한 당사자의 신의성실을 전제하고 이러한 계약에 사적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

제53조 국내 또는 해외출신의 공공 또는 민간 법률가, 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협회는 발행된 규정에 따라 국내은행 및 보험위원회(CNBS)의 이전 승인으로 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제54조 의회는 재무부와 협의하여 금년 국가투자협회의 초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

산을 승인한다.

국가투자협의회는 후년도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을 준비하여 제출해야한다.

제55조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는 그 회사의 본국에 있는, 그 관할상업등기소에서 등록증의 공증된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간단인가로 온두라스에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동일한 법인의 규정과 정관에 따른다. 상업등기소는 그 비문을 국가의 기타 다른 단체의 승인이나 결의가 필요없이 즉시 처리해야한다. 이 문서는 공식적으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에 온두라스법률에 위반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기소는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이러한 처분이 온두라스에서 회사의 운영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해당 표기법을 통해 작성된다.

제56조 상업전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10조 온두라스에 본적지가 없는 회사들은 외국법에 의거하여 법인화된 회사로 간주된다. 온두라스에서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는 「투자증진 및 보호법」 조항을 준수하여 상업공공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소재지는 등록이 이루어진 곳으로 간주된다.”

제57조 「산업재산법」 제55조, 제60조 및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55조 이 법의 제35조, 제39조, 제45조 및 제54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산업재산등기소는 지적재산등록이나 기타를 보유하는 웹 포털에서 그리고 웹 포털이 개설되는 한, 재산등기소의 웹 포털은 90일 동안 발명의 개요를 포함하는 공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의 제기없이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적재산의 장관 또는 사무총장, 이사나 부이사장 아니면 산업재산등록관이나 그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관련 특허결의안 부여의 발행절차를 거친다. 결의안은 또한 지적재산등기소의 온라인

상에도 공개된다, 아니면, 웹 포털이 개설되는 한, 재산위원회의 웹 포털에도 공개된다. 해당 공개는 무료로 이루어진다.”

“제60조 일단 이 법 제61조에 언급된 요구사항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지적재산등기소는 90일동안 웹사이트나 그 외의 곳에 그리고 웹 사이트가 개설됨에 따라 공지 발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없이 이 기간이 지난 후, 산업재산국장이나 부국장 또는 이사장에 의해 서명된 아니면 부이사장이나 그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특허 부여 결정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결의안은 또한 지적재산등기소의 웹사이트에, 아니면, 웹사이트가 개설되는 한, 재산등기소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발표는 무료로 이루어져야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표이전에, 산업재산등기소는 제출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로 명령에 명시된 기간동안 발표를 연기할 것이다.”

“제61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발표기간동안 요청된 기록과 관련하여 산업재산등기소에 이의제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근거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거로 뒷받침 되어야한다.

일단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상기 단락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면, 그리고 이 법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이 준수되었다면, 등기부는 산업디자인을 등기할 것이고, 재산등기부 웹 포털에 아니면, 웹 포털이 개설되는 한, 무역 및 산업 사무국 웹포털에 권리가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공지 발표를 진행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등록증을 제공한다. 해당 발표는 무료로 이루어진다.

제58조 「국내 및 외국 회사의 대표, 유통 및 대리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면허허가자와 피면허자 사이의 분쟁은 조정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 그러한 협의가 실패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논란은 「투자 보호 및 증진법」 조항에 따라 중재로 넘어간다.”

제59조 민간-공공합작투자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현행 법에 설립된 특별 해

택 제도를 받는 민간-공공합작투자는 국내투자기술사무국에 동반자와 신입고용 인뿐만 아니라 거주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사무국에서 결정된 서류와 요건이 인정되면 현재 조항에 설정된 범주에 의거하여 포함된 거주자를 대신한 거주카드 갱신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허가가 자동적으로 발행될 것이다. 이러한 허가 부여를 위하여 모든 요구사항이 있는 신청 제출이외에 다른 절차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 기업의 어떠한 의견이나 견해도 필요하지 않다. 동반 또는 신입고용인 투자자 범주에 의거하여 거주허가를 발행하는 결의안은 통제와 감시를 위하여 내무 및 인구부 그리고 이주관리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국가투자협의회는, 일단 증서를 발행하고 거주자의 본적을 규제하면, 내무 및 인구부에 그것을 제출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연장하는 이에 대응되는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60조 다음 조항들은 상법전 제308조와 제309조, 민법전 제1565조 그리고 1992투자법에 대한 5월 29일자 명령 80-92를 대체한다.

제61조 이 조에서 철회된 1992년 5월 29일 명령 제80-92에 따라 설립된 투자는 이 법이 발효된 때부터 5년 동안 그 혜택이 유지될 것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해 설정된 보호제도의 일부가 된다.

제62조 이 법이 발효된 날부터 12월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국내외 회사의 대표, 유통 및 대리점에 관한 법률」로 보장되는 보상지급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증거 철수를 위한 공개된 기간이 없는, 대표, 유통 또는 대리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하나 이상의 일반재판소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중재로 알려진 목적으로 유예하기 위하여 사건을 아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당사자는 판결이 내려질 중재센터를 가리키는 중재재판 결정에 각 재판관에게 자신의 사건 제출 의사를 알려야 한다. 판사는 상대 당사자에게 그러한 청원이 있음을 알리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근무일 5일 이내에 중재신청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발행할 것이다. 일단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판사는 동일 사안에서 선언된 사전 예방조치를 제외하고 재판 보류를 명할 것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중재 센터로 그 절차를 회부할 것이다. 이 중재재판소의 관할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설정될 것이다. 중재판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집행되면 사법절차는 재개될 것이고 이 사법절차는 판결이 이루어진 동일한 법원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경우,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는 중재재판관할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들에 의해 지불되는 자신들의 증거철회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청원자가 유죄판정을 받는다면, 중재판정단은 그 유죄에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권한에 따라 개시되는 중재 신청규칙과 관련하여, 그들은 이 법 조항의 주체가 된다.

제63조 이 법 제3조 제2)단의 목적상, 공중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이해된다.

제64조 현행 법은 노동, 환경 및 사회적 기업책임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확립된 고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자체적으로 만든다.

제65조 계획 및 대외협력부(SEPLAN)에 이해당사자가 요청하는 한 요건완료와 준수보장 제공을 위해 최대 90일을 기한으로, 개별법률에 확립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는, 공공행정에서 기인한 절차에 설정된 마감기한에 이르지 않은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우선자격이 있고 제40조에 설정된 것보다 투자 총액이 작은 그러한 프로젝트는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집행협정에 의해 집행되기 위하여 인가될 수 있다.

제66조 이 법에 참조된 규정들은 발행 후 90일 이내에 승인된다.

제67조 이 법은 관보 “La Gaceta”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절 온두라스 민간투자진흥법

1. 목적과 원칙

제1조 **Article 1.- 목적(Purpose)** 이 법률은 공공질서와 사회적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 입법목적은 국가의 투자역량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통합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계약절차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Article 2.- 정의(Definitions)**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For the effects of this Law these terms will be understood as follows:

a) **위험 분배(Risk Allocation)**.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결과를 감수할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프로젝트, 작업 또는 서비스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b) **민관합작투자(민관협력)를 진흥하기 위한 위원회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OALIANZA)**.

민간투자(민관협력)를 수행하기 위한 대형사업(프로젝트)들과 그 절차를 관리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

c) **규제기관들(Regulating Entities)**. 이 법률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짓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과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공공행정

d) **부문기관들(Sector Entities)**. 특별한 공공행정부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하거나) 확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행정기관들

- e)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 국가가 민간투자(민관협력)를 통하여 이 법률의 틀 내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 f) **민간 제안(Private Initiative)**. 민간투자(민관협력) 모델 중에서 개인(민간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행할 공공행정의 감독 하에 공공부문에서 공익적 성격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책임을 지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행정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
- g) **민관합작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공공부문이 국내외의 민간부문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각 당사자들 사이의 위험을 분배하고 확정하는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는 협력체계
- h) **공공투자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 Public Investment National Systems**: 민간합작투자진흥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 COALIANZA)의 감독하에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 설립

제3조 Article 3.- 원칙들(Principles).

민간투자(민관협력)를 위한 계약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이 법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법의 목적으로서 확인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
- b) 공공투자절차에서의 효율성 그리고/또는 실효성
- c)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적 지출원인행위를 이행하여야 하는 결과로 인하여 그로 인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한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역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행법상 계약을 완전하게 체결하고 관

리·이행하기 위한 재정책임성

- d)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한정된 비용으로 더 좋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효용(만족도)을 극대화하는 것
- e) 경쟁제한적 행위이고 담합에 의한 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회피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더욱 낮은 효과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f) 민간투자(민관협력) 사업자의 모든 행위는 공적이어야 하고, 엄격한 책임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재정지출원인행위가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 g) 공공-민간 사업 프로젝트 Public-private projects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 h) 계약으로 인한 효용(후생)과 위험을 적절하게(균형있게) 분배
- i)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확립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예산사업(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기획, 평가 그리고 감독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이행절차를 마련할 것
- j) 민간투자사업(프로젝트)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공기업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로 인하여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도 존중할 것
- k) 민간사업자들은 민간투자-민관협력(PPA) 계약을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현행

환경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최상의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준수하는 관행을 수용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민간합작투자 체계

Article 4.- 방식(Modalities). 민간투자-민관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a) 건설, 운영·관리, 운송, 작동의 보수·유지 그리고/또는 공공서비스(행정사무)
- b) 기존의 사무 그리고/또는 공공서비스(행정사무)의 확대
- c) 관공서의 사무에 의하지 않고 이에 선행하여 공공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 d) 국가가 공공서비스(행정사무)의 제공과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임대 또는 임차의 방식으로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
- e) 수탁자의 재화, 서비스, 회계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발전프로그램 또는 사업 프로젝트, 신용계약 등을 관리하는 것 ; 그리고
- f) 현행법상 민간투자(민관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기타의 다른 방식들

자연인 또는 법인, 국민 또는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대형 민관협력(민간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전시킬(감당할) 수 있는 명성, 명예, 경험,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역량 등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rticle 5.- 민간참여(민관협력) 체제의 조직형태

민간참여(민관협력)의 당사자들은 공동투자(조인트벤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지분참여계약, 운영·관리계약, 신탁기금 또는 이를 통하여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다른 형식 또는 방식으로 조직(구성)될 수 있다.

Article 6.- 이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의 또는 국제적인 경쟁입찰
2. 국내의 또는 국제적인 현상공모
3. 기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어떠한 형태의 절차. 이 경우에는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명세서(사양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양과 조건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다.

명세서(사양서)는 무엇보다도 입찰참가자들이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조건, 유형 그리고 품질,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전문성,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기준(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조달계약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가치가 서비스의 제공조건 등이 언급된다. 이를 통하여 (민관협력)사업을 완수하는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제7조 Article 7.- 공공행정의 지원(기여)

민관협력 체제에 의하여, 국가는 - 그리고 관련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 확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확실한 약속은 특정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관협력모델에서 그 당사자들이 선택한 기여분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현금 지원

전문적인 연구

금융시장에서 할인가능한 증권의 구매 혹은 지분의 제출특정한 공공자산의 보조, 이는 공공의 사용을 원인으로 하고/하거나 동법 제32조에 따른 수용의 목적(대상)이 되는 자산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이전하지 않고 양허(사용승낙)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민관협력활동을 하기 위한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부여하는 것

국가소유자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자산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국가에 상응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원칙 그리고 목적 등에 의해 엄격하게 구조화된 형태의 법적으로 수권된 기여(지원)의 기타의 방식,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금을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공익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지원될 수 있다.

제8조 Article 8.- 민관협력계약의 기본적 내용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어떤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관협력계약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하게 된다.

a) 계약의 목적 그리고 일반조건

b) 민관협력의 지속기간

- c) 민관협력 프로젝트(사업)의 이행시한
- d)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e) 계약당사자의 위험분배, 예컨대 재무적 위험, 상업적 위험, 운영상의 위험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정상적 위험
- f) 필요한 경우 담보제공의 요청
- g) 공공서비스 그리고/또는 공공재 그리고/또는 품질기준과 사업관리지표
- h) 아웃소싱하는 인력
- i) 필요한 경우 경제적으로 다시 균형을 맞추는 조항
- j) 개인 또는 공공행정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규정
- k) 민간사업자 그리고/또는 공공행정 중 어느 한 쪽에서 민관협력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기 이전에 집단적(단체)으로 이뤄진 계약관계의 인수 또는 소멸조항을 둘 수 있다.
- l)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전환권 조항
- m) 중재조항

이와 유사하게 필요하다면 민관협력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조항)도 규율할 수 있다.

- 1) 계약, 서비스 그리고 관련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 재산의 압류, 몰수 그리고 파산시
- 2) 자산의 재산적 권리의 성격, 그 운영·관리 그리고 이전 등

- 3) 제3자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민사 책임 그리고 이러한 분쟁(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
- 4) 결과, 정책적 위험 이전, 입법적 변화, 거시경제적 행위, 영업정지
- 5) 해석조항 그리고 용어의 정의
- 6) 권리양도, 부채탕감, 손해배상소송 그리고 분할계약
- 7) 시설을 검사, 감독할 의무 그리고 감독자는 회계자료와 실제의 직무운영을 모두 감사
- 8) 회계자료 작성 그리고 기업의 회계감사, 품질관리, 운영상의 문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확인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와 인증(확인)의 성과
- 9) 사용료, 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논리적 기준 그리고 적정비용과 면책조항 지불조건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 그리고
- 10) 세금, 수수료 기타 다른 재정적 지불부담

제9조 Article 9.- 위험

계약당사자들 상호간의 내재적 위험과 비용분담은 민관협력의 구체적 수요에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합의되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말미암은 비정상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재정적, 사업적, 운영상의 위험들을 아울러서 산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은 민관협력의 양 당사자 그리고 국가의 참여는 그 협력(참여)에 기여한 만큼 한정된 책임을 분담하는 것으로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제10조 Article 10.- 계약체결의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공식은 간단해야 하고 단지 다음의 2가지 요소만을 고려한다.

이는 경제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이다.

경제적 요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한된다.

어떤 사업자가 사전(계약발주시)에 정한 계약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른 품질과 효율성 등을 훼손하지 않고 더 나은 경제적 조건(더 적은 비용)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사업자가 국가에 더 큰 이익을 제공하는가?

어떤 사업자가 국가에 대하여 더 적은 자금출연 내지 지원을 요청하는가?

기술적 요소는 그 전문분야의 입찰참가 사업자들이 사전에 정한 계약조건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술적 요소는 공공행정에서의 경제적 입찰참여신청을 받기 전에 사전적인 자격심사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고 국가에게 가장 편안한 입찰참가 기회를 보장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현행법률과 그 용어와 조건 등에 따른 규제는 입찰신청을 접수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선발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3. 제도적 기본틀

가. 민관협력 진흥위원회

제11조 Article 11.- 민관협력 진흥위원회

민관협력진흥위원회를 (온두라스)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분산된 기구로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법적 지위와 고유한 자산을 갖고, 이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진흥하고 그 절차를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그 위원회는 3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7년의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되며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다.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위원들은 (온두라스) 공화국 대통령이 제출한 9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선출된다.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온두라스 국민
2.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함
3. 대학졸업, 관리행정 그리고 기업가로서의 광범위한 경험, 특히 박사학위 우대
4. 적어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5. 헌법 제250조에 규정된 국가 및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만기가 된(지급책임이 발생한) 계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자이고, 국무회의에서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화국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온두라스 공화국 헌법 제205조 제19항 조항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서명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Article 12.-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직무)이 정지된다.

- 1) 사임
- 2)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적정절차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의회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해임의결
- 3) 구금명령 또는 감금결정
- 4)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

제13조 Article 13.-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기능

민관협력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두 공익을 위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하며 관리하는 과정에 민관협력(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계약절차를 배타적으로 관리함
2. 행정 각부장관(국무위원들), 자치기구들, 지역개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혹은 분권화된 기구 그리고 다른 정부산하기관들과 협력하여 모든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운영적 그리고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권, 승인, 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다른 내부의 공공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투자프로젝트들 중에서 특별한 영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4. 국가공공투자시스템에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

To collaborate with the municipalities in the evaluation of the projects submitted to programming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Public Investments System;

5. 규제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민관협력모델을 통하여 제공되는 프로젝트 사업,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추적(이행관리)하는 것
6.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민관협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분석)를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민간투자를 진흥하기 위하여 자문하고 협력하는 것
7. 민관협력이 국가의 비전 및 발전계획의 목적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담보
8. 민관협력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행하도록 보장
9. 위원회가 더 잘 기능(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부규정을 승인하는 것
10. 현행법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행정부에 제안하는 것
11. 예산 및 연간업무계획을 승인하는 것
12.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알고 승인하여야 한다.
13. 행정부 국무위원이 요청하거나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
14. 위원회 직원들의 임명, (고용)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을 승인하는 것
15. 행정부 국무위원들(각 부처 장관들이) (민관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
16. 위원회의 권한범위 내에서 (민관협력의 진흥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부 국무위원들이 각 부처 내에서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

17. 현행법률 또는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다른 임무(기능)

위원회는 분기별로 의회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14조 Article 14.- 사무총장

민관협력진흥위원회를 지원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위원회 사무총장을 설치·운영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과 최소한 동일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무총장은 공인된 국내외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후보자들을 추린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하고, 채용절차는 위원회가 정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5조 Article 15.- 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임무 이외에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위원회의 비서로서의 활동
- 2) 위원회의 기능에 맞추어 실무작업반의 활동을 계획, 감독(통제)하고 지시
- 3) 민관협력진흥위원회에 부여(출연)된 자산의 관리
- 4) 민관협력진흥위원회가 요청하는 법률관계 기타 다른 성격의 정보들을 위원회에 제공

- 5)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불허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
- 6) 연간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안 등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출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감독계획, 평가계획 등을 수립·시행
- 7) 최고감사기구의 요청과 (온두라스) 공화국 법률에 따라서 회계자료(장부)를 명확히 작성
- 8) 현행법 조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공공조달 및 (물자)구매 등을 수행
- 9) 위원회에서 수권한 수량에 맞게 재화와 서비스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 10) 실제 적용가능한 기준에 따라서 직원을 선발하고 해임
- 11)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에 부과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업무처리를 이행하고 개선하는 것
- 12) 연간업무운영계획에서 위원회가 사무총장이 수행하여야 할 성과목표로 정한 것을 달성
- 13) 기타 위원회에서 그 기능(임무)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 사항

제16조 Article 16.-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사무총장의 지위는 위원들 과반수의 합의로 자유롭게 그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단계

Article 17.- 민관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둘 다 비롯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무장관, 자율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역발전위원

회 그리고 민관협력진흥위원회 등이 그 제안을 시작할 수 있다.

Article 18.- 공공부문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공공투자시스템에 포함하게 될 민관협력(민간참여) 모델에 따른 사업 프로젝트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비용편익분석과 실현가능한 자본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제 프로젝트, 작업 그리고/또는 위임·위탁사무의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민관협력진흥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공행정기관 또는 단체가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공공투자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Article 19.- 민관협력(민간참여) 프로젝트의 선택

민관협력진흥위원회는 사전에 계획된 국가공공투자시스템 하에서 어떤 “공공부문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체제에 따라서 시행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된다.

Article 20.-

공공부문 그리고/또는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들을 수립, 검토, 평가, 타당성 분석 그리고 최종 선택하는 전 과정은 이 법률에 포함된 특별조항과 일반원칙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근거규정들에 의하여 이뤄진다.

다. 규제기관

Article 21.- 범위

최고감사기구(감사원)에 의하여 “민관협력 감독협회기구”를 설치하고, 이는 기

술적,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독립성을 갖추고 운영한다.

민관협력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율, 통제 그리고 이행관리 하는 것은 이 법의 효력에 기반한 특별법에 의해 창설된 부문별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만약 특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특별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관협력감독기구는 그 규제, 통제 그리고 이행관리를 할 책임을 진다.

Article 22.-

민관협력감독기구는 3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감독관들은 의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임명한다. 감독관들은 (온두라스) 공화국 대통령이 각기 다른 부문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9명의 후보자를 제안하면 그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감독관들은 민관협력진흥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조건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독관들은 5년의 임기로 선출되고 연임(재선출)될 수 있으며 감사원(최고감사기구) 출신들이다.

Article 23.- 민관협력사업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1)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의 공급 및 관리를 통제하고, 계약의 준수, 민관협력을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등
- 2)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자 및 공급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동등한 품질관리 및 서비스의 공급거절 및 재확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감독
- 3)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경쟁제한성이 있거나 독점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예방

- 4) 개별 계약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민관협력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
- 5) 모든 경우에 적법절차 원칙을 존중하면서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가 이뤄진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적용가능한 기준 그리고/또는 계약에서 예상되는 제재 적용
- 6) 관계기관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취하기 이전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법령과 계약 또는 인·허가된 사항에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7) 적법절차의 원리에 기초하여 법령, 규정 또는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권한
- 8) 서비스 공급사업자로부터 법령,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자료)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를 통하여 기밀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함
- 9) 매년 의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권한 ; 그리고
- 10) 이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 기타 사항

4. 투명성과 당사자 보호

가. 국가의 보호

Article 24.-

재무적 그리고 비재무적 위험, 신용보증, 장래의 채무인수 그리고 재무적 비상 사태는 재무부 장관(스페인어로 SEFIN)이 확정하는데, 이는 국가공공부채위원

회(National Public Credit Commission)에서 수행한 재정위험분석에서 제시된 평가결과와 자문·권고에 기초한다.

Article 25.- 국가가 부담하게 될 채무의 등록 및 공개

재무부장관은 예산조직법과 공공신용관리기준의 규범적 틀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인 모든 신용보증, 담보, 우발채무 등을 계량화된 수치로 적절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제정·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부채관리시스템(스페인어로 SIGADE)에 등록된다.

Article 26.- Authorization of limits.

민관협력 계약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된 우발채무와 계량화된 회사(quantifiable firm)의 수량과 한계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평가하여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심사를 통하여 다년간의 예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온두라스) 공화국 예산의 일반조항(총론)에서는 향후 발생가능한 신용보증한 대금의 청구 혹은 매 회계연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금청구의 지급에 응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재정지출수치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총생산의 5%는 비재무적 공공부문의 민관협력계약으로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와 계량화된 회사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한계이다. 이 비율(5%)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역량에 적절하게 3년에 한번씩 수정할 수 있다.

나. 지적 재산권의 보호

Article 27.- 지적재산권의 권리부여 및 보호

민간부문의 민관협력사업 제안을 받아서 이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는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시되는 모든 형태의 문서를 보유하

고, 이와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거나 사업자 스스로 사업성 평가절차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문서)를 반환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제안은 그 사업자의 창의적 사업아이템을 담는 등 지적재산권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및 이에 관한 국제조약들에 따른 보호기준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의 적용범위는 이 법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서 확정된다.

5. 경과조항

Article 28.- 국무위원, 공기업 그리고 자유키구들은 공공행정에 관한 일반법률 또는 특별법에 따라서 부과된 권한과 의무 등을 준수하게 된다. 민관협력진흥위원회도 기존의 제도(기관)들과 잘 협력하여 우선순위가 인정된 민관협력 프로젝트들을 조정하게 된다.

Article 29.- 민관협력진흥위원회는 개별 사업프로젝트별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권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총액(가치)의 2% 한도 내에서 서비스 제공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감독관도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규제에 대한 기여로서 총 계약금액에서 판매세를 차감한 이후에 1% 한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자금은 민관협력진흥위원회와 민관협력 감독관을 위한 신탁기금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단독의 개별 수익자가 된다. 그 신탁기금을 운용하는 수익은 두 기관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되는데, 이는 각 기관의 운영예산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이 신탁기금을 설치하는 근거조항은 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계연도 말에 기금의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 앞으로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국가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집행)할 수 있는 신탁기금의 유보금으로 잡아두게 된다.

Article 30.- 민관협력 체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업자들은 이를 운영하면서 받는 대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자들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의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icle 31.-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위원들, 사무총장 그리고 지원인력(일반직원) 또한 민관협력감독관과 그에 소속된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위한 연금기금과 사회보장체계에 등록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관협력진흥위원회의 위원들, 사무총장 그리고 임시직 또는 일반직 직원과 민관협력감독관과 그 직원들 모두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설정된 임금제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Article 32.-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몰수절차는 “공공의 필요 목적을 위해 규율하는 법률(the Law on Regularization of Property for Public Need Purposes)”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언(공공의 필요가 있으므로 자산을 몰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보상비용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의해서 지급하게 된다.

Article 33.-

민관협력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약관계의 형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자산의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형태의 세금, 부담 혹은 의무 등이든지 모두 면제된다.

Article 34.-

이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관협력진흥위원회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만 하면 된다.

민관협력진흥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앙정부 그리고/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행정기관으로부터 민관협력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고 그에 관한 허가, 인가, 승인을 득하는 등 기타의 행정행위를 받는다. 일단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체결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회사(수혜자, Grantee)가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Article 35.-

민관협력사업의 체결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갈등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갈등이 사업승인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등장하게 되거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등을 아울러 모두 의무적으로 중재절차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그 중재조항의 용어와 조건에서 정한 유효한 규칙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한다.

Article 36.- 특별한 예외 Express Exclusion.

국가계약법 제1조 마지막 문단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이 법률(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및 그 이행과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다.

Article 37.-

민관협력진흥위원회 그리고 민관협력감독관은 자생적인 조직(self-sustainable institutions)이어야 한다. 국가는 민관협력위원회와 민관협력감독관이 이 법률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는 동시에 그들의 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민관협력감독관은 기존의 인·허가 감독관을 대신한다. 회계연도 중에 민관협력 감독관은 기존의 인·허가 감독관에게 배정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인·허가 감독관은 그들이 선출된 잔여기간 동안 3인의 민관협력감독관 중 1명으로 인준된다.

기존에 인·허가 감독관에 속해 있던 직원들도 민관협력감독관의 구성원 일부가 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유하며 주기적인 성과평가의 대상이 된다.

Article 38.- 규제 시한

이 법률에 따른 규제는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포(발령)하게 된다.

Article 39.-

“공공사무와 국가기반시설의 진흥과 발전에 관한 법률(the Law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Public Works and National Infrastructure)을 포함하고 있는 1998년 11월 20일 입법명령(Legislative Decree) 283-98호”는 폐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계약이 체결된 민관협력사업은 계속 “공공사무와 국가기반시설의 진흥과 발전에 관한 법률(the Law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Public Works and National Infrastructure)”에서 정하고 있는 규율(조항)과 계약에 의해 합의된 조건이 적용

된다. 단, 그 민관협력계약을 연장, 재협상 혹은 갱신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Article 40.- 효력 발생

이 법률은 공보(“La Gaceta”)를 발간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